

2023년 찾아가는 대전·충청지역

자활정책포럼

2023. 06. 12.(월) 14:00~17:00
(구) 충남도청 본관 2층 대회의실

현장중심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기금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 주관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대전광역자활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충북광역자활센터



충남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대전지부 | 충남세종지부 | 충북지부

| 주최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후원 |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

목 차

2023년 찾아가는 대전·충청지역 자활정책포럼 개요	5
주제발표	9
사례발표	25
토론문	49
부록 대전·충청 지역자활센터&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현황	97

2023년 찾아가는 대전·충청지역 자활정책포럼 개요

I 주제 및 추진목적

현장중심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기금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 추진 목적

- 충청권 현안과 이슈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현장과 자활 전문가의 연계를 통해 자활 정책의제 확산 도모
- 충청권 공동의 자활 정책이슈 발굴 및 실효성 있는 자활정책 개발, 충청권 연대를 통해 충청권 자활사업 활성화와 안정적 사업운영, 자활현장 발전에 기여
- 현장중심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기금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모색

II 포럼 개요

- 주 제 : 현장중심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기금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 일 시 : 2023년 6월 12일(월) 14:00 ~ 16:00
- 장 소 : (구)충남도청 본관 2층 대회의실
- 주 최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주 관 : 대전광역자활센터, 충북광역자활센터, 충남광역자활센터, (사)한국지역자활센터 협회 대전지부 / 충남세종지부 / 충북지부
- 후 원 : 대전광역시

III 세부일정

시 간		진행내용	담당자
13:30~14:00	'30	○ 출석 확인	
1부			
14:00~14:15	'15	○ 개회 – 포럼 일정 안내 ○ 내빈소개 ○ 인사말 - 정해식(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 ○ 축하 및 격려사 - 박종화(대전광역시 복지여성특별보좌관) - 정충현(보건복지부 정책관) - 김영진(대전세종연구원장) - 김인희(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장)	사회자
14:15~14:45	'30	○ 주제발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자활 기금 운영 및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경휘 (예수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14:45~15:15	'30	○ 사례발표 <지자체 자활기금 운영 우수사례> 1. 2019~2022 자활기금 운영 현황 2. 자활기금 활성화 사례	박용훈(음성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임종기(태안지역자활센터 센터장)
15:15~15:30 휴식('15)			
2부			
15:30~16:30	'60	○ 종합토론 -토론1 김선경(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토론2 박향희(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일자리사업본부 본부장) -토론3 송유정(자활기업 휴먼케어 대표) -토론4 홍정윤(보령지역자활센터 센터장) -토론5 황명구(세종사회서비스원 사무처장)	좌장 : 장창수 (대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16:30~16:50	'20	○ 질의응답	
16:50~17:00	'10	○ 정리 및 폐회	

※ 토론회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제발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자활기금 운영 및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전략과 과제」

(지자체 자활기금 & 중앙자산키움펀드의 합리적 운용방안)

김경휘 / 예수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현장중심의 자활기금 운영 및 제도적 기반조성을 위한 전략과 과제 -자활기금과 중앙자산키움펀드 운용방안-

2023. 6. 12.

김경휘
(예수대학교 사회복지학부)

1. 들어가는 글

■ 자활기금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제26조의4: 보장기관은 원활한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자활기금을 적립해야 함.
- 2021년 현재 전체 243개 지자체 중 237개 지자체 기금 적립.

■ 237개 지자체에 적립된 자활기금은 2021년 기준 약 3,887억 원임(감사원, 2022).

- 16개 시/도 자활기금 : 약 711억 원
- 221개 시/군/구 자활기금: 약 3,176억 원

■ 적립된 자활기금 관련한 기금 적립 및 기금운용 방식 등에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 됨.

- 자활기금, 중앙자산키움펀드(이하, 중키펀드) 모두 기금의 적립방식, 운용방식 면에서 다양한 문제가 2010년 이후 지속해서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

1. 들어가는 글

- 보건복지부는 자활기금 관련해서 현황 파악 및 진단,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한 바 있음.
 - 김재진, 홍범교, 김경휘, 황보람. [자활기금 사용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2011.
 - 김경휘, 백학영, 엄태영, 최상미. [자활기금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2019.
- 기존 자료 분석결과, 보건복지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금 활용이 활발하지 못함.

자활기금 운용현황

(단위: 천 원, %)

연도	전년도 보유액(A) ^{주)}	조성액(B)	집행액(C)	집행률[C/(A+B)]
2019년	397,376,325	37,678,598	36,972,096	8.50
2020년	376,686,628	35,436,748	35,575,096	8.63
2021년	377,217,843	45,081,383	33,598,211	7.96

자료: 감사원(2022).

1. 들어가는 글

- 또한, 감사원(2022) 자체 조사 결과, 기금과 관련해서 자활기금 미조성, 자활기금 미집행, 자활기금 용도 외 집행으로 분류하여 운영 현황을 분석한 바 있음.

- 자활기금 미조성
 - 경상남도, 의왕시, 과천시, 동두천시, 울릉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등 6개 지자체는 2022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자활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있음
- 자활기금 미집행
 - 자활기금 집행실적이 없는 지자체는 매년 약 30개 지자체가 자활기금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수원시(2021년 12월 기준 4,769,173천 원 적립) 등 11개 지자체는 3년간 자활기금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등 자활기금을 쌓아만 놓고 적극적으로 집행 하지 않고 있음
- 자활기금 용도 외 집행
 - 자활기금 용도 외 사용 현황 파악 결과, 동해시는 2020년 1,000,000천 원을 일반회계로 편입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59,000천 원을 광역자활센터 기관운영비로 집행하는 등 총 12개 지자체가 3년간 총 2,893,995천 원을 정해진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하고 있음

1. 들어가는 글

- 기존 자료 분석결과, 일부 지자체는 자활기금 집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자체 수	32	27	30
지자체명	대전광역시 동구·중구, 가평군, 계룡시, 김포시, 무안군, 수원시, 영월군, 원도군, 의령군, 청도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성군, 고령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군포시, 김천시, 나주시, 보은군, 부여군, 신안군, 양산시, 예산군, 예천군, 장성군, 장수군, 철원군, 평창군, 함평군	대구광역시 동구, 서울특별시 중구, 무주군, 봉화군, 영광군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동구·강화군, 고창군, 구리시, 구미시, 군위군, 신안군, 이천시, 태백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종로구·금천구·송파구, 구례군, 양주시, 연천군, 영덕군, 예천군, 의성군, 장성군, 증평군, 평창군, 함평군

자료: 감사원(2022).

2. 자활기금 현황 및 문제점

2. 자활기금 현황

-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 26조의3 및 제26조의4
- 내 용: 지자체 출연금, 다른 기금 출연금, 이자수입, 자활근로 실시에 따른 수익금, 운용 수익,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
- 활 용: 자활근로 참여자 및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이차보전, 신용보증 비용 등
- 적립규모: 약 3,887억 원(2021년 12월 말 기준; 감사원, 2022)

구분	자활기금 설치 지자체	적립액
시/도	16	71,122,515
시/군/구	221	317,578,500
계	237	388,701,015

2. 자활기금 현황

1) 기금 활용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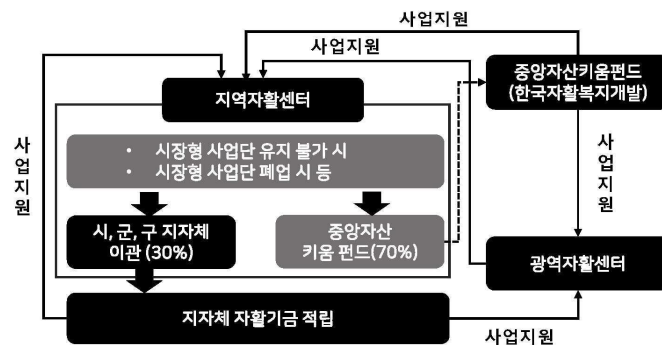
- 이차보전
- 자활기업 및 시장형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자금 대여
- 자산형성지원
- 지역자활지원계획 집행 비용
- 신용보증비용
- 자활사업 연구 개발 평가 등 지원
- 사회보험료 지원
- 자활기업 육성 활성화
 - 전문컨설턴트 연계한 창업 컨설팅
 - 자활기업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 지원
 -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 자활기업 근로 수급자 사업자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 지자체별 수급자 및 차상위자 지원 사업
- 전국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사업비 위탁
- 해당 시도 자활기금 일부 지원

2. 자활기금 현황

2) 자활기금 주요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기금 적립 관련 문제

- 자활근로사업단 폐업 및 시장형 사업단 유지 불가 등의 경우 발생하는 재산에 대한 중기펀드와 지자체 자활기금 이관 비율 문제 발생.
 - 현) 중기펀드 70%, 지자체 자활기금 30%로 각각 이관되어 적립되어 지원됨.



2. 자활기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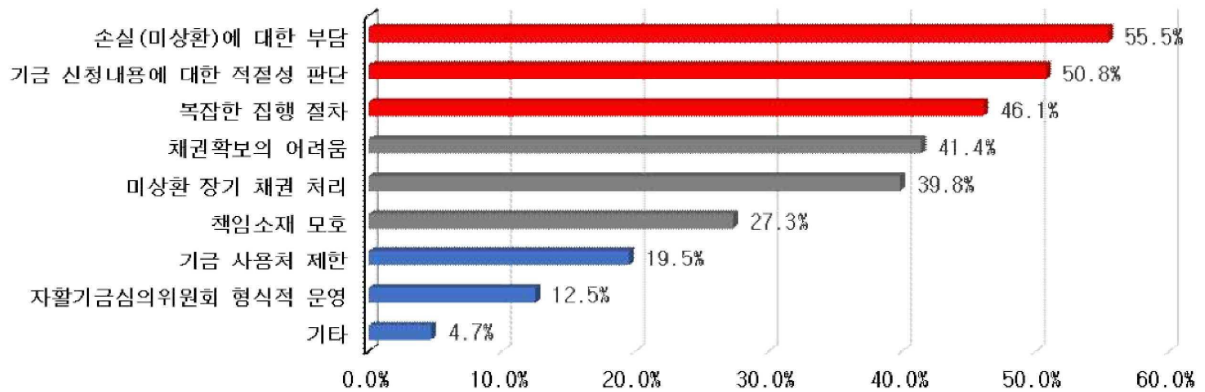
- 지역자활센터에서 지자체로 적립되는 자활기금 규모가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큼.
 - 시장형 사업단 수 감소, 수익금 규모 감소 등
- 지자체로부터 적립되는 타 기금 및 지원금 기대 요원.
 - 지침 기준 적립액(5억) 충족 노력 수준임.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큼.
- 지원금액 기준 인상 요구 및 사용처 확대(비용자성지원사업) 요구는 많아지나 지자체 자활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제약이 많은 실정.

→ 기금활용 독려, 지속적 요구로 인해 비용자성지원은 과거보다 많아졌으나, 지자체 기금 유입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게 되고 비용자성사업지원이 많아지는 만큼 적립된 기금 규모가 점차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 지자체는 적정 기금수준 유지를 위해 원금확보 되는 용자성사업지원 중심으로 지원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4. 자활기금 개선방향

(2) 기금 운용 관련 문제

-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결과, 자활기금 활용이 활성화 되기 위해 해결되어야 요소로 미상환에 대한 부담, 기금 신청 내용에 대한 적절성, 집행절차, 채권확보, 책임 소재 등으로 나타남.



자료: 감사원(2022).

2. 자활기금 현황

- 또한, 기금 운용 측면에서 지속해서 제기되는 문제로서, 비용자성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까다롭고 지극히 제한적임.
 - 기존 조례분석 및 기금 담당공무원 인터뷰 결과, 상당수의 지자체가 비용자성지원 사업에 대해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지원하도록 설정하고 있음.
- 현실반영 안된 기금 지원 한도 조정 필요
 - 임대보증금 지원 수준이 부동산 시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3. 중앙자산키움펀드 현황 및 문제점

3. 중앙자산키움펀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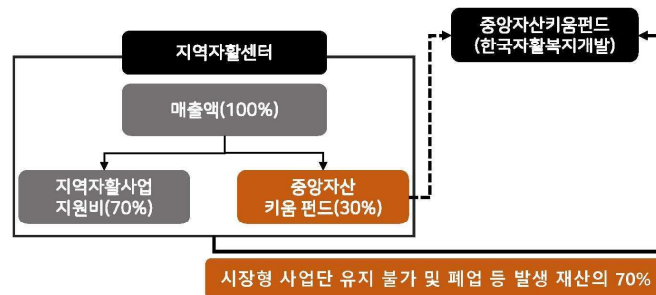
1) 중기펀드 사업 현황



3. 중앙자산키움펀드 현황

2) 중앙자산키움펀드 기금 적립 구조

- 현재 중기펀드의 재원은 지역자활센터 매출금의 30%, 자활근로사업단 폐업 및 시장형 사업단 유지 불가 등의 상황에 발생한 재산의 70% 그리고 이자소득 등으로 구성 됨.



3. 중앙자산키움펀드 현황

3) 중앙자산키움펀드 주요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기금 적립 측면

- **중기펀드 적립에 대한 대내외적인 관심 증대 및 문제의식 확산**
 - 기금 적립에 대한 정부 내 정책적 관심 증대, 센터 재원으로 중기펀드 적립-운영에 대한 지자체 인식(부정적) 변화 등으로 인해 현행 방식으로 기금 적립을 지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쉽지 않음.
- **자활근로사업단 폐업 및 시장형 사업단 유지 불가 등의 경우 발생하는 재산에 대한 중기펀드와 지자체 재산 분할 비율 문제**
 - 이때 발생하는 재산의 70%, 지역자활센터 매출금 중 30% 중기펀드로 적립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이견 확산.

3. 중앙자산키움펀드 현황

(2) 중기펀드 관련 주요 문제

■ 기금 적립 관련 문제

- 중기펀드의 주요 재원이 시장형 사업단 유지 불가 및 폐업 시 발생하는 재산, 지역 자활센터 매출금에서 발생한 기금임에도 개별센터가 일부 중기사업 신청 시 요구되는 매칭금이 없어서 중기펀드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함.
- 일부 센터는 신청 시 요구되는 매칭금을 매출액의 70%로 적립되는 활성화지원금으로 매칭을 하기도 하나, 이 역시도 일부 센터에 한정된 상황임.
- 지역적 고유특성 및 개별 센터의 요구를 반영한 펀드 활용이 어려움.

3. 중앙자산키움펀드 현황

■ 운영 측면 문제

- 개별 센터가 필요한 시기에 지역에 필요한 사업 발굴 및 지원 한계
- 기금 운영 관련 문제:
 - 중기펀드 적립액 규모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과 이것을 필요한 시기에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가 필요한 때, 시의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중기펀드에서 지원되는 규모화 및 광역화 사업 외에 지역별 수요 및 개별 센터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수요 발굴,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 중기펀드와 지자체 기금과의 사업 중복성(?) 또는 역할이 모호함.

4. 자활기금 및 중앙자산키움펀드 개선방향

4-1. 자활기금 개선방향

- **지자체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자활기금 활용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지자체 단체장, 의회, 담당공무원의 의지에 따라 지자체 자활기금 활용이 결정되는 상황을 변경시킬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장치가 필요함. 감사원(2022)의 경우 중앙기금화 제안.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제고**
 - 현재 위원회 대상 및 위원회 자격요건 강화를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필요. 자활 및 기금운용 전문가 반드시 포함 필요.
- **자활근로사업단(시장형 사업단 유지 불가 및 폐업)에서 발생한 재산을 나누는 비율에 대한 근본적인 재논의 필요**
 - 기존 7(중기펀드): 3(지자체 자활기금)에 대한 비율 조정 논의 필요성 제기.
 - 중기펀드 내 광역단위에서 기금을 보다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자원 지원 필요.
 - 지자체 자활기금 규모 및 비응자성지원사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비율 조정 논의 필요

4-1. 자활기금 개선방향

▪ 자활기금 활용처 확대 필요

- 현재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융자성사업지원이 아닌 보다 다양한 그리고 실제적인 지원(비 융자성사업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 필요.

▪ 자활기금 환수에 대한 책임 소재 및 환수 방안 마련 필요

-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의지 및 역량 그리고 책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미상환 채권에 대한 상환 방안 마련 필요.

▪ 융자성지원사업(점포임대료 지원 등)에 대한 기준 인상 재고

- 현재 자활사업안내에 명시된 임대지원, 사업자금대여 등 사업 기준 제고 필요.

4-2. 중앙자산키움펀드 개선방향

1) 기금 적립 방식 개선 논의 필요

▪ 중기펀드로 적립되는 재원의 적립방식 및 비율에 대한 재논의(?) 필요

- 법적측면에서, 매출금에서 적립되는 중기펀드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타당성 확보 필요.
- 기금으로 적립되는 재원 중 매출금의 30%, 시장형 사업단에서 발생하는 재산의 70%가 기금을 적립되고 있는 구조에 대한 개선 논의 및 후속연구 필요.

→ 현재 지자체와 지역자활센터가 인식하고 있는 중기펀드 기금 적립방식에 대한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4-2. 중앙자산키움펀드 개선방향

2) 지역 중심 맞춤형 중기펀드 운영 방향 설정

- 사업의 대상, 범위, 지원 규모에 따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간 역할 재정의 필요
 - 현재 중기펀드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7개 정도가 광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함.
 - 향후, 근본적으로 중기펀드 운영방향 관련해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중기펀드사업 뿐만 아니라 중기펀드 관련 광역자활센터 역할과 연계하여 각 전달체계의 역할 재정의 필요.
 - 더 나아가 중기펀드와 지자체 자활기금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 시작 필요
- 향후 중기펀드 관련 계획수립 및 운영 관련한 전달체계간 역할 재정리 필요.

4-2. 중앙자산키움펀드 개선방향

3) 지역 중심 ‘지역자활 활성화기금’ 지원 논의 필요

- 중기펀드 운용 시, 광역자활센터에게 직접 위탁하는 사업과 함께 광역자활센터가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소규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역자활 활성화기금(안)’ 을 조성하여 매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 기금은 시도별 중기펀드에 적립된 기금의 적립 비율 또는 지역자활센터 수, 참여자 수 등을 고려한 포물러 방식으로 기금을 만들어 지원.
 - 지역별 편차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본 포물러 지원금 외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금을 배분할 수 있음. 향후 평가를 통해 일부 지자체는 차년도 추가(감액) 지원
- 개발원은 광역자활센터가 ‘지역자활 활성화기금(안)’ 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수립, 인력 교육 및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

4-2. 중앙자산키움펀드 개선방향

4) 적립된 중기 펀드 다양한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현재까지 적립된 중기펀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함.
 - 중앙단위에서 사업을 결정하여 top-down 방식으로 광역자활센터나 지역자활센터에 사업을 나누거나 지원하는 것이 아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광역자활센터 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제안하고 또 운영할 수 있는 사업 운영 방식 또는 기금 운영이 필요함.
- 이를 위한 중기펀드심의위원회에 함께 실무단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실무구조도 새롭게 구축하여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이 체계는 지역자활 활성화기금(안)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부여도 필요함.

4-2. 중앙자산키움펀드 개선방향

5) 지자체 자활기금 매칭 조건 개선

- 중기펀드 사용 시 일부사업에서 요구되는 센터 매칭금 삭제 논의 필요
 - 현재 일부 사업신청 시, 지자체 자활기금 및 보조금 등의 매칭을 요구하고 있으나, 개별 센터의 상황이 따라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 있음.
 - 해당 요건이 제시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기도 하나, 현실적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고 싶어도 지자체 단체장 의지, 담당공무원 의지, 센터 및 사업단 상황 등 많은 외생 요인으로 정작 필요함에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 따라서 사업 신청시, 지역자활센터에 요구되는 매칭금 삭제 및 비율을 낮추는 등에 대한 전격적인 논의필요.

참고문헌

- 감사원. [자활기금 위탁운영 추진 및 집행관리 미흡]. 감사결과 통보자료. 2022.
- 김경휘, 백학영, 엄태영, 최상미. [자활기금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2019.
- 김재진, 홍범교, 김경휘, 황보람. [자활기금 사용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2011.

사례발표1

「2019 ~ 2022 자활기금 운영 현황」

박용훈 / 충북음성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충북음성지역자활센터는

핵심가치

공감과 소통
높은 기준과 자부심

미션

근로를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목적

저소득층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서적 · 경제적 자립지원

비전

자립의 성지

역할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을 통한 근로 기회제공
자립경로 설정 · 자활정보제공 · 자활기업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복지 서비스지원
직업교육 · 상담 및 취업지원

자활기금 운영 현황



2019~2022 자활기금 사용실적

YEAR 2019

1. 자활센터 이전 및 교육장 활성화
2. 자활근로사업단 오백국수(금왕점) 개소
3. 자활근로사업단 에코팩토리 자동화 제조업 활성화
4. 자활근로사업단 제터먹이 저장공간 확보
5. A형간염 항체검사 및 예방접종 지원

YEAR 2020

1. 자활근로사업단 오백국수(금왕점) 시설 개선
2. 자활기업 마이커피 시설 개선
3. 자활기업 크린운동화빨래방 시설 개선

YEAR 2021 ~ 2022

1. 자활근로사업단 공비임비 차량지원
2. 자활근로사업단 군청매점 신규사업 개소
3. 자활기업 뽕송뽕송다듬이 시설장비 지원
4. 자활기업 마이커피 교육지원
5. 자활근로사업단 에코팩토리 차량지원
6. 자활기업 오백국수(금왕점) 시설장비 지원

2019년 Ⅷ - i (시설장비 지원)



사업현황			지원현황		
자활근로사업단		아이스집(현 에코팩토리)			
사업시작		2018년 01월 ~ 현재			
업태 / 종목		제조업 / 제조업			
참여인원		13명			
연 매 출	2018년	36,047,244원			
	2019년	154,895,160원			
	2020년	150,893,418원			
	2021년	227,184,033원			
	2022년	125,709,603원			

사업내용		- 냉매팩(아이스팩) 생산 제조 및 판매 납품 - 읍면지역 및 전국의 냉매팩 수요처를 발굴하여 생산부터 납품까지 진행	
생산품목		- 냉매팩(아이스팩)	
자활기금 지원내용		- 자동화설비 2대 - 전동지게차(1.75톤) 1대 - 파렛트 램핑기 1대	- 작업장 냉난방기 1대 - 천막(창고) 1대
사업목적		- 2018년 1월 개소 시 수동 생산라인을 이용하여 아이스팩 완제품 생산 - 하루 생산량 한계로 자동화 시설 생산라인 구축 및 생산품 납품·운송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자활기금 지원금		93,184,510원	

2019년 Ⅶ – ii (사업장 개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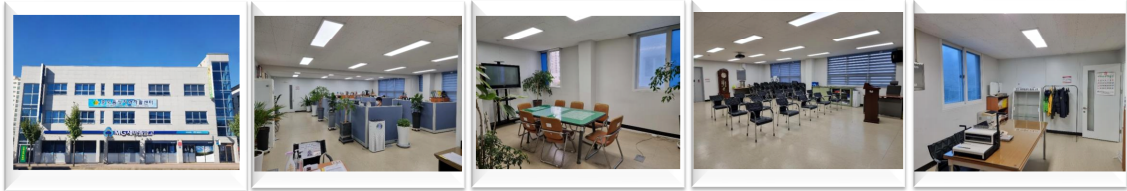
사업현황			지원현황	
자활근로사업단	아이스잡(현 예코팩토리)		사업내용	- 냉매팩(아이스팩) 생산 제조 및 판매 납품 - 음성지역 및 전국의 냉매팩 수요처를 발굴하여 생산부터 납품까지 진행
사업시작	2018년 01월 ~ 현재		생산품목	- 냉매팩(아이스팩)
업태 / 종목	제조업 / 제조업		자활기금 지원내용	- 승압전기공사 - 작업장 환경개선 (아스콘공사, 바닥타일, 행거도어 설치)
참여인원	13명		사업목적	- 2018년 1월 개소 시 수동 생산라인을 이용하여 아이스팩 원제품 생산 - 하루 생산량 한계로 더욱 넓은 작업장 이전 및 자동화 시설 생산라인 구축
연 매 출	2018년	36,047,244원	자활기금 지원금	5,329,000원
	2019년	154,895,160원		
	2020년	150,893,418원		
	2021년	227,184,033원		
	2022년	125,709,603원		

2019년 Ⅶ – iii (시설장비 지원)



사업현황			지원현황	
자활근로사업단	제티맥이(현 음성제티맥이)		사업내용	- 누룽지, 미숫가루, 과일청 제조 판매
사업시작	2016년 01월 ~ 현재		생산품목	- 누룽지(사각4종류, 원형6종류) - 미숫가루, 과일청
업태 / 종목	제조업, 소매업 / 식품제조가공업, 농산물		자활기금 지원내용	- 천막(창고) 1대
참여인원	6명		사업목적	- 생산품 재고 보관 공간 확보 - 거래처와 안정적 유통라인 구축
연 매 출	2018년	35,339,773원	자활기금 지원금	1,430,000원
	2019년	26,898,705원		
	2020년	39,733,970원		
	2021년	29,775,183원		
	2022년	25,348,754원		

2019년 Ⅶ - iv(센터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내용		지원현황	
자활센터 운영	충북음성지역자활센터	자활기금 지원내용	- 센터 이전에 따른 임대보증금 지원
센터이전	2019년 06월	사업성과	- 기존의 열악하였던 센터의 이전 - 쾌적한 공간에서 업무효율 증대 - 실무자 및 자활참여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 - 독립된 상담 공간 및 회의실 분리· 확보 -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주 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83, 2층		
면 적	360.30㎡(108.99평,공용면적 포함)		
내 용	공유재산(건물) 무상사용허가	자활기금 지원금	300,000,000원

2019년 Ⅶ - v(센터 시설장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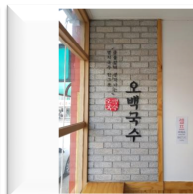


사업현황		지원현황	
자활센터 운영	자활센터 교육장 활성화	자활기금 지원내용	- 센터 교육장 환경개선 지원 : 교육장 연수용 테이블30개, 의자 100개, 냉난방기1대, 빔프로젝터 1SET, 철제캐비닛 2대, 스피커 1SET, 환풍기 1식
센터이전	2019년 06월	사업성과	- 넓고 쾌적한 교육공간 제공 - 교육을 통한 참여주민의 전문기술 습득 지원으로 일할 기회 제공 - 전문적인 교육의 참여 확대 - 자활근로 참여주민의 잠재적 능력 향상 및 교육의 질 향상 -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 가입자 교육 적극 지원
주 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83, 2층		
면 적	360.30㎡(108.99평,공용면적 포함)		
내 용	공유재산(건물) 무상사용허가	자활기금 지원금	19,998,000원

2019년 Ⅶ – vi(A형간염 검사 및 예방접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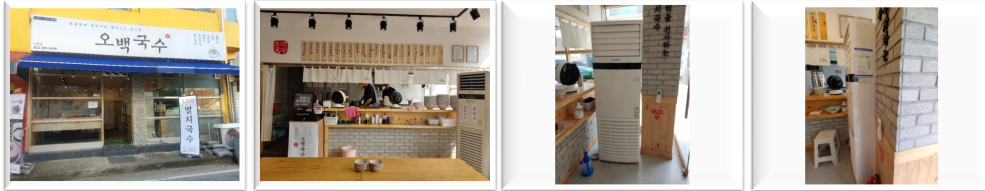
사업현황		지원현황	
센터 및 사업단	실무자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주민	자활기금 지원내용	- 자활근로 참여주민 및 실무자 A형간염 검사 및 예방접종 지원
센터이전	2019년 06월	사업성과	- 전염성 강한 질병으로 사전의 위험 차단 - 자활근로 참여주민 및 실무자 대상 검사 진행 - 무함체 대상자 2회 예방접종 진행
주 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83, 2층		
A형간염 항체검사	- 실무자 5명 - 자활근로참여자 59명	자활기금 지원금	1,436,000원
A형간염 예방접종	- 1차 : 2019년 05월 14일 16명 - 2차 : 2019년 11월 20일 10명		

2019년 Ⅶ – vii(임대보증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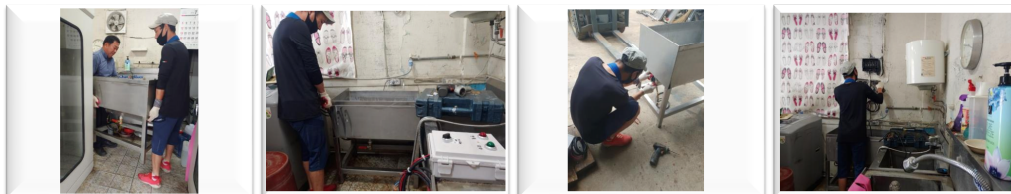
사업현황		지원현황	
자활근로사업단	오백국수 금왕점	사업내용	- 프랜차이즈 국수점
사업시작	- 2019년 8월 12일 - 2022년 11월 자활기업 창업	생산품목	- 멸치국수 외 각종 국수, 만두, 주먹밥 등 메뉴 판매
업태 / 종목	음식점업 / 한식	자활기금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지원
참여인원	5명	사업목적	- 기존의 자활 5대 표준화사업에서 벗어나 특화된 사업 운영 - 대중성 있는 사업 아이템 선정 - 「오백국수」 브랜드 가맹점 운영 - 자활기업 창업 목적
연 매 출	2019년	규 모	- 1층 40㎡(12평)
	2020년	자활기금 지원금	- 15,000,000원
	2021년		
	2022년		

2020년 Ⅲ – i (시설장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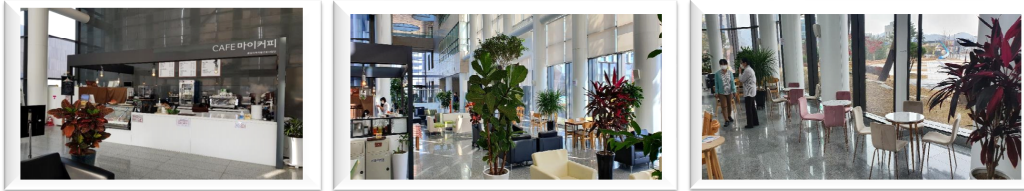
사업현황			지원현황	
자활근로사업단	오백국수 금왕점		사업내용	- 프랜차이즈 국수점
사업시작	- 2019년 8월 12일 - 2022년 11월 자활기업 창업		생산품목	- 멸치국수 외 각종 국수, 만두, 주먹밥 등 메뉴 판매
업태 / 종목	음식점업 / 한식		자활기업 지원내용	- 시설장비 지원 : 냉난방기 구입
참여인원	5명		사업목적	- 현재 매장에 사용중인 냉난방기는 기존 자활기업 「국수랑만두랑」에서 사용하던 압소용 냉난방기(40평형) - 현재 매장의 전력초과로 냉난방기(25평형) 구입 설치 - 매출증대 및 사업단 활성화 기여
연 매출	2019년	27,370,346원	규 모	- 1층 40㎡(12평)
	2020년	23,315,674원	자활기업 지원금	- 2,310,000원
	2021년	51,474,001원		
	2022년	57,947,235원		

2020년 Ⅲ – ii (시설장비개보수 지원)



사업현황			지원현황	
자활기업	크린운동화빨래방		사업내용	- 운동화세탁
사업시작	- 2011년 9월 자활기업 창업 - 2020년 10월 폐업 - 2020년 10월 자활근로사업단 개소 - 2022년 8월 사업 종료		생산품목	- 운동화세탁
업태 / 종목	서비스 / 세탁업		자활기업 지원내용	- 시설장비개보수 지원 : 운동화빨래 불림통 개보수
운영인원	2명		사업목적	- 현재 사용중인 운동화 불림통의 고장으로 수작업 진행 - 한정된 근로인력으로 작업시간 지체 - 서비스 제공 일정 지연 및 예약 차질 - 매출 감소 불가피로 개보수 시급
연 매출	2019년	25,011,000원	규 모	- 1층 20㎡(6평)
	2020년	12,354,000원	자활기업 지원금	- 990,000원
	2021년	17,064,164원		
	2022년	13,484,420원		

2020년 Ⅲ – iii(시설장비 지원)



사업현황			지원현황	
자활기업	마이커피 (한국소비자원 내 1층)		사업내용	- 한국소비자원 내 카페, 매장 운영
사업시작	2019년 10월 자활기업 창업		생산품목	- 카페메뉴, 매장
업태 / 종목	휴게음식점 / 카페, 매장		자활기업 지원내용	- 시설장비 지원 : 의/탁자 지원(4인기준 2SET)
운영인원	3명		사업목적	- 현재 사용중인 의/탁자는 2015년 자활근로사업단 개소 시 구입 - 노후화 및 마모로 가죽 의자 및 탁자 모서리 등 훼손 - 쾌적한 공간 및 서비스 제공 - 매출증대 및 서비스 질 향상
연 매 출	2019년	28,212,990원	규 모	- 1층 25㎡(7.5평)
	2020년	73,971,146원	자활기업 지원금	- 2,000,000원
	2021년	76,912,504원		
	2022년	80,730,716원		

2021년 IV – i (시설장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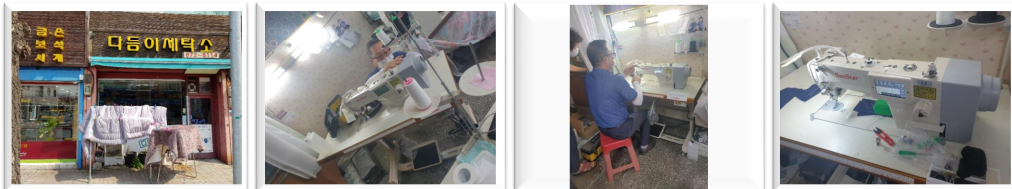
사업현황			지원현황	
자활근로사업단	군정매점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내 전자수입인지사업)		사업내용	- 군정매점, 구두수선, 전자수입인지사업
사업시작	2016년 6월		생산품목	- 매장, 수선(서비스), 전자수입인지(서비스)
업태 / 종목	소매 / 구내매점		자활기업 지원내용	- 전자수입인지 신규사업 시설장비 지원 : 데스크탑 등 가전 및 네트워크 증축 책상 등 가구 지원
참여인원	4명		사업목적	- 자활근로 참여주민 일자리 창출 - 음성군 외국인 4만여 명 이상을 대상으로 서비스 지원 - 자활근로사업단 「군정매점」에 신규사업 추가 - 출입국관련 서류발급 등 전자수입인지사업 지원
연 매 출	2021년	7,851,000원	규 모	- 4층 9㎡(3평)
	2022년	34,274,712원	자활기업 지원금	- 5,152,300원

2021년 IV – ii(시설장비 지원)



사업현황			지원현황	
자활근로사업단	공비임비		사업내용	- 정부양곡 배송, 경로당 양곡 배송
사업시작	2017년 1월		생산품목	- 양곡 배송
업태 / 종목	서비스 / 택배		자활기금 지원내용	- 양곡 배송용 차량운반구 구입 : 포티 II 원캡 내장탑차
참여인원	5명		사업목적	- 현재 두 대의 화물차량으로 음성군 9개 읍면 월 1,362세대에 1,765포를 나뉘어 배송 - 음성군 9개 읍면 396개소의 경로당에 한 해 3,116포의 양곡을 3차례 나뉘어 배송 - 운송중인 화물차량 중 2007년식 포티 II 원캡 생동탑 차량의 노후회 심각 - 양곡 배송 중 크고 작은 차량 고장의 반복 - 참여주민의 안전운전에 위험이 있어 신규차량 도입 시급
연 매출	2020년	65,865,450원	규 모	- 1층 68㎡(20평)
	2021년	61,314,198원	자활기금 지원금	- 24,907,910원
	2022년	70,242,960원		

2021년 IV – iii(시설장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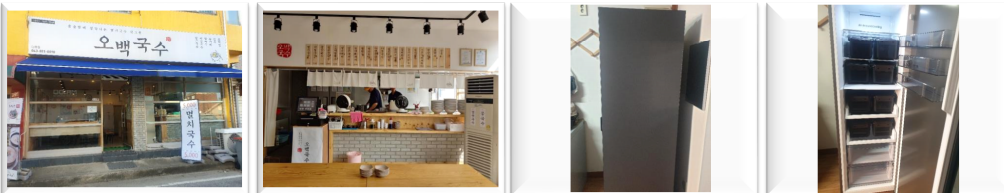
사업현황			지원현황	
자활기업	뽕송뽕송다듬이		사업내용	- 의류 세탁, 드라이클리닝
사업시작	2011년 9월		생산품목	-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업태 / 종목	서비스 / 세탁업, 수선		자활기금 지원내용	- 시설장비 지원 : 자동사절미싱 구입
운영인원	2명		사업목적	- 기존 사용하던 미싱(중업용 재봉틀)은 2008년 자활근로사업 시작 시 중고로 구매 - 내용연수 11년 경과하여 노후화로 수리 반복 - 수선 작업 중 미싱이 종종 멈추거나 실이 잘 안 걸려지는 등 시간이 경과될수록 수선의 일이 많아져 매출 및 신용도 하락
연 매출	2020년	23,240,000원	규 모	- 1층 20㎡(6평)
	2021년	27,220,000원	자활기금 지원금	- 1,750,000원
	2022년	27,400,000원		

2021년 IV – iv(교육비 지원)



사업현황			지원현황	
자활기업	마이커피 (한국소비자원 내)		사업내용	- 한국소비자원 내 카페, 매점 운영
사업시작	2019년 10월 자활기업 출범		생산품목	- 카페메뉴, 매점
업태 / 종목	휴게음식점 / 카페, 매점		자활기금 지원내용	- 교육비(컨설팅) 지원
운영인원	2명		사업목적	- 카페이 컨셉, 메뉴, 경영진단 - 매출확대 및 비용절약 방안 -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연 매 출	2020년	73,971,146원	규 모	- 1층 25㎡(7.5평)
	2021년	76,912,504원	자활기금 지원금	- 2,000,000원
	2022년	80,727,716원		

2022년 Ⅱ – i (시설장비 지원)



사업현황			지원현황	
자활근로사업단	오백국수 금양점		사업내용	- 프랜차이즈 국수점
사업시작	- 2019년 6월 12일 - 2022년 11월 자활기업 출범		생산품목	- 멸치국수 외 각종 국수, 만두, 주먹밥 등 메뉴 판매
업태 / 종목	음식점업 / 한식		자활기금 지원내용	- 시설장비 지원 : 스탠드 김치냉장고(340L) 구입
참여인원	3명		사업목적	- 기존 사업단에서 2020년 7월 9일에 구입 - 사용중인 김치 냉장고의 용량 : 200L - 점점 더 다양해지는 메뉴만큼 재료 증가 - 수납 및 보관할 공간의 부족 - 김치 및 재료용 아채의 신선도 유지 - 스탠드 김치 냉장고 추가 구입
연 매 출	2021년	51,474,001원	규 모	- 1층 40㎡(12평)
	2022년	57,947,235원	자활기금 지원금	- 2,035,000원

2022년 Ⅱ – ii(시설장비 지원)



사업현황			지원현황	
자활근로사업단	에코팩토리		사업내용	- 냉매팩(아이스팩) 생산 제조 및 판매 납품 - 음성지역 및 전국의 냉매팩 수요처를 발굴하여 생산부터 납품까지 진행
사업시작	2018년 01월 ~ 현재		생산품목	- 냉매팩(아이스팩)
업태 / 종목	제조업 / 제조업		자활기금 지원내용	- 냉매팩(아이스팩) 운송용 화물차량 지원 : 봉고 I 톤 카고 초장축 구입
참여인원	13명		사업목적	-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택배 물량 증가 - 비수기에도 꾸준히 아이스팩 출고 - 원활한 제품 출고로 매출증대 기대 - 2010년 구입한 봉고Ⅲ 1톤의 내용연수 11년 경과 및 잦은 고장에 따른 수리 비용 절감 - 참여주민의 안전 운전을 위하여 신규차량 지원
연 매출	2021년	227,184,033원	자활기금 지원금	23,034,600원
	2022년	125,709,603원		

CONTENTS	01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제1항 : 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비 및 임차료 지원 제7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시행 2017.5.12.][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361호. 2017.5.12.]								
	02 2023년 4월 30일 기준 자활기금 누적 금액								
	1,005,721,362원								
	03 2019~2022 자활기금 사용 금액								
	506,281,320원								
	04 2019~2022 자활기금 적립 현황								
	104,717,558원								
	<table> <tr> <td>2019년</td> <td>76,962,341원</td> </tr> <tr> <td>2020년</td> <td>16,729,616원</td> </tr> <tr> <td>2021년</td> <td>3,574,700원</td> </tr> <tr> <td>2022년</td> <td>7,450,901원</td> </tr> </table>	2019년	76,962,341원	2020년	16,729,616원	2021년	3,574,700원	2022년	7,450,901원
2019년	76,962,341원								
2020년	16,729,616원								
2021년	3,574,700원								
2022년	7,450,901원								



사례발표2

「자활기금 활성화 사례」

임종기 / 충남태안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자활기금 활성화 사례발표

임종기 센터장 (충남태안지역자활센터)

- ◎ 자활기금이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운용하는 기금을 말함.
- ◎ 저소득층 및 자활공동체에 사업자금대여, 이차보전, 신용보증 등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자활기금이 2001년 정부출연금 250억원으로 시작하였고 2019년말 적립한 자활기금은 약 4,000억원에 이릅니다.
- ◎ 또한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2018년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201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 적립을 의무화 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흡한 형편이며 자활기금 활성화에는 너무나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운영되어 효율적인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 지역자활센터 역시 기금 사용에 대한 욕구가 있으나 지자체의 자활지원사업 특성에 따른 까다로운 행정적 절차로 활용이 어렵거나, 기금고갈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용도의 기금대여에 대하여 난색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음.
- ◎ 또 다른 문제점은 현재 자활기금 관련법에서 정한 기금의 사용을 자활공동체 사업자금대여 및 전세점포임대료 위주로 활용하고 있어 다양해진 자활사업 참여자 및 저소득층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 특히 점포임대료의 경우 임차료 및 보증금의 성격이 강해 원금회수율이 높은 항목에 대한 사용으로 현재 자활기금 운용이 안정적 운영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다양한 욕구가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 및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없는 법적·행정적 한계를 갖고 있음.
- ◎ 이처럼 자활기금이 원래의 취지대로 대상자의 실질적 기초보장, 빈곤문제 완화등을 위하여 적재 적소에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여건정비가 필요함.

■ 태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1. 12. 17.]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607호, 2021. 12. 1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태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남도 및 태안군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군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7. 자활근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기금 운용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조성을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4.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6.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 또는 자활기업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7.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자 등을 위한 비용
8.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임대보증금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9.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10.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1.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2.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13. 탈수급자에 대한 자활성공수당 지원
14.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태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 2. 19.] [충청남도태안군규칙 제735호, 2021. 2. 19., 제정]

제3조(운용규모) ① 군수는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운용재원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재원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여 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지원 또는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기금 지원·대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또는 단체에 한정한다)

3. 자활사업참여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사업 실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기금 지원·대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 설치 목적에의 부합 여부

2. 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자활기금 지원·대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대여 및 상환)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지원 범위 액수를 초과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규모 및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1. 사업자금: 자활기업 7천만원 이내, 자활근로사업단 3천만원 이내

2. 전세점포 임대자금: 자활기업 1억원 이내, 자활근로사업단 7천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액의 상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사업자금

가. 자활기업: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
나. 자활근로사업단: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

2. 전세점포 임대자금: 3년 이내 상환 원칙. 다만, 군수는 사용수수료 납부 현황, 사업성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여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16조(자활성공수당) ① 자활성공수당의 지급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태안군 자활사업수행기관에서 자활근로에 3개월 이상 참여한 이력이 있으며, 퇴사 후 탈수급 유지중인 사람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자활근로 참여이력의 인정기간은 2020. 3. 1. 이후 참여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③ 자활성공수당을 지급 받은 후 자활사업에 다시 참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④ 자활성공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자활성공수당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한다.
- ⑤ 자활성공수당은 자활참여기간과 탈수급 유지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최대 2회, 총 2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태안군 자활기금 조성금액 : 8억2천9백만원(2023년 4월말 기준)

■ 태안지역자활센터 자활기금 활용사례

● 자활기금 적립 내역 (2020년~ 2023년)

주요 사용 내용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차량 및 비품 매각		150,000		1,330,000
매출이자 등	3,386,705	978,356	4,685,265	
2019년 3분기 이전 매출관련 금액 반납			38,724,110	
합 계	3,386,705	1,128,356	43,409,375	1,330,000

◎ 자활기금(연도별 사용현황 2020~2023년) ◎

1) 지원금

(단위 : 원)

항목/연도	2020	2021	2022	2023(예산)
중사지역량강화여비사업	2,860,400	3,353,600	4,000,000	4,000,000
자격증취득사업	5,000,000		5,000,000	5,000,000
사업단기능보강사업	20,000,000			
사업단차량구입지원사업		29,000,000		
센터리모델링 공사지원사업			299,988,640	
신규사업단 지원사업				
합 계	27,860,400	32,353,600	308,988,640	9,000,000

★ 센터리모델링 지원사업: 지하1층, 지상2층 (총 면적 633.62㎡)

교육장,사업단2개,센터사무실,휴게실,상담실,회의실,참여자 휴게실,준비실,서고,다목적실등
총 공사비(기자재,비품포함) : 4억5천 [자활기금 3억, 기능보강사업 5천, 활성화지원금1억

2) 대여(융자)금

항목/연도	2020	2021	2022	2023(예산)
사업단 점포임대보증금	110,000,000	110,000,000	110,000,000	130,000,000
사업단명	누룽지7천 홈푸드4천	누룽지7천 홈푸드4천	누룽지7천 홈푸드4천	누룽지7천 홈푸드4천 신규사업 2천

3) 자활 기금 사용으로 인한 효과성

- ①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참여 확대
- ② 기존 자활사업단의 기능보강을 통해 사업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 기여
- ③ 신규 자활사업단 점포임대보증금 융자를 통한 경쟁력있는 사업장 구축
- ④ 자활센터 인프라 구축(사무실, 교육장 등) 사업 지원으로 전문적인 자활서비스 지원 가능

4) 자활기금 사용 절차

- ① 태안군 자활기금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확인
(* 각 지자체마다 자활기금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에 세워져야 할 필요성)
- ② 매년 차년도 정부예산이 확정되기 전 자활기금 사용계획서를 시군구에 제출, 내년예산 반영

5) 향후 자활기금 활용방안

- ①선진지 벤치마킹사업을 위한 견학 비용
- ②사업단 노후차량 교체 지원사업
- ③참여자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 ④신규사업단 초기 창업자금 지원(리모델링 및 장비구입비)

■ 2023년도 자활기금 사용 확정

○ 자활기금 신청 내용

- 자활사업의 건물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설비·시설 지원 등을 통한 품질향상 등 시장 경쟁력 확보(임대보증금 용자, 시설·설비 구입비 지원) : 1억3천만원 (2개 사업단, 신규사업)
- 자활사업 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참가비용 및 실무자 여비 지원 : 400만원
- 참여주민의 자립, 자활을 위한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 500만원 (운전면허증, 조리사, 바리스타자격증, 간호조무사, 중장비기사등)
- 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 매칭금 지원 : 2천만원

■ 자활기금 사용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보면,

-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자립기반마련과 일자리를 통한 탈 빈곤의 계기 마련
- 자활.자립 의지 고취 및 무기력감 극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지역사회에서 저소득층 빈곤문제에 자활센터의 역할이 확대됨.
- 일을 통한 복지를 통해 사회경제적 문제로 소외된 지역주민의 문제를 함께 해결함.

■ 나가는 말

- 우선 자활사업 기금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활용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이 시급함.
- 무엇보다 자활기금을 활용함에 있어서 지자체장이나 담당공무원의 매우 높은 열의와 의지가 있어야 함.
- 그러나 이렇게 높은 열의와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담당공무원의 기금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금사용이 활성화될 수 없음
- 따라서 기금활용에 있어 기금손실에 따른 책임문제의 해결 또는 완화방안이 중요함
- 지자체로 하여금 적재적소에 자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통로를 열어주고 이에 수반되는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통하여 자활기금이 저소득층 및 빈곤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는 실질적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함
- 현재 적립되어 있는 자활기금을 통한 자활센터 설립 및 교육장 건립 등은 자활사업 참여자 의 자신감을 심어줄 뿐 아니라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적자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됨
- 그리고 자활기금 활용에 있어서 단순한 현금지원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점포 및 대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제시됨
- 현재 각 지자체의 자활기금 조례는 활용처가 다소 제한적이어서 수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어렵고, 내용이 거의 유사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 자활기금이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마중물로서 앞으로 더 많은 활용방안들을 가지고 보다 폭넓고 발전적이며 지속가능성을 통하여 저소득층 자활 및 자활사업의 발전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론1

「자활기금 및 중앙자산키움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언」

김선경 /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자활기금 및 중앙자산키움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언

김선경 센터장(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

대전·충청권의 찾아가는 정책포럼의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활기금 및 중앙자산키움펀드의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가 선택되었다. 오늘의 시간을 위해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통해 대전·충청권, 더 나아가 전국에서 자활기금 및 중앙자산키움펀드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활사업은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이후, 실업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되어 20여년이 지나고 있다. 혹자는 지금을 자활사업 다각화 및 제도약 시기라 명명하고 있다. 2018년 이후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사업단 등과 같이 자활사업 프로그램이 신설되면서, 자활사업 참여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의 변화도 2019년 이전까지는 남성보다 여성 비중이 높았으나, 2020년 기준, 지역자활센터 남성참여자의 비율(51.2%)이 여성참여자(48.8%)보다 높아지고 있다. 또한, 40대, 50대의 참여자 규모가 줄어드는 대신, 60세 이상 노령자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20년 50대 참여자(35.3%)에 이어 60대 이상의 참여자(31.3%)의 비중이 두 번째로 높다. 이러한 참여자 변화를 반영한 자활사업의 시대적·정책적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략마련이 필요한 지금의 시간이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성·운용하는 기금이다. 2019년 7월, 자활기금 설치의 의무화되어 기금의 활용도를 높여 자활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김경휘 교수님이 발제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37개 지자체에 적립된 자활기금은 2021년 기준 약 3,887억 원이나, 집행률은 7.96%에 그치고 있어 기금활용이 활발하지 못하다.

김경휘교수님이 발제한 자활기금 개선방향 중 첫째, 자활근로사업단(시장형사업단 유지 불가 및 폐업)에서 발생한 재산을 나누는 비율에 대한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함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현 중기펀드 70%, 지자체 자활기금 30%의 비율로 적립하는 것을 지자체 자활기금으로 100% 적립하여, 지역현안에 맞는 비유자성 지원사업 확대 및 중앙자산키움펀드 매칭 활성화 등 현장맞춤형 자활기금 활용이 되도록 개선되기 바란다.

1) 자활사업의 변화와 발전방안(21년3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둘째, 원활한 자활기금 활용을 위해서는 지원조례에 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전의 경우 별도의 자활기금 조례는 동구·대덕구이며, 서구·유성구의 경우 저소득 주민지원기금, 중구는 사회복지기금 조례로 통합되어 자활계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례 상 기금의 용도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의 2016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표준안 배포했으나, 자활기금 조례의 표준안이 제시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태안 지역자활센터 임종기 센터장이 제안한 자활기금이 원래의 취지대로 대상자의 실질적 기초보장, 빈곤문제 완화 등을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함에 대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현, 대전광역시 5개구 2022년 자활기금 사용확인 결과, 자활기금 적립액의 약 15%가 활용되고 있으며, 용도는 임대보증금이다. 대전광역시의 자활기금은 대전복지재단이 만들어지면서, 대전광역시의 자활기금 조례가 폐지되고, 대전복지재단기금으로 이관, 통합되어 현 대전사회서비스원의 기금 운영 및 관리규정에 의거 운용되고 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만 사용가능하며, 그동안 임대보증금으로만 활용되었다가, 2022년, 자활한마당 및 민관연찬회 운영에 관한 비용자성 비용으로 지원되었다.

셋째, 중앙자산키움펀드에 대한 적립방식 및 운영개선이 필요하다. 중앙자산키움펀드로 다양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매칭금이 없어 사업개발비와 사업장 환경개선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시기가 맞지 않아 지원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단 전체 매출금의 30%와 시장형 사업 폐지에 따른 매출액 70%가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적립되고 있으나, 지역에서는 자활기금의 매칭이 어려워 그림의 떡이다. 이러한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매칭에 대한 기준을 삭제하거나, 매칭비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활근로예산은 지침에 의거 인건비, 운영비의 비율에 고정되어 있어, 사업의 일상적인 수행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여건이다. 올해 일부 센터에서 다회용기세척사업의 신규사업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자활기금의 매칭이 어려워 중앙자산키움펀드의 사업개발비 신청을 할 수 없어 추진을 보류하고 있다.

중앙자산키움펀드의 지역균형발전자금을 지역의 매출금 적립액을 반영하여 지역 사례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개발원 중심의 중앙자산키움펀드 운용에서 일정 부분은 지역 실정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기금을 광역자활센터에 이관하여 지역자활현장에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자활사업 비전 2030은 ‘사회통합과 빈곤예방의 지역사회안전망 구현’이다. 자활기금 및 중앙자산키움펀드의 적재적소의 활용은 이 비전을 실현하는데 마중물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지역자활센터가 20여년동안 근로빈곤층을 위해 달려왔던 시간들은 대한민국의 근로연계복지, 공공부조, 사회적 경제, 사회서비스 분야가 자리잡고 발전하는데 기여했다.

앞으로 자활주민과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사회안전망 구현의 중심이 되는 지역자활센터가 자리매김하는데, 오늘의 포럼이 그 길에 한 발짝 떼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2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 활용 방안」

박향희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일자리사업본부 본부장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 활용 방안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일자리사업본부장 박향희

2

“인내자본, 관계자본으로 성장하고, 자활현장에서 자활현장으로 선순환되어야”

- 본 포럼의 발제문의 문제제기와 과제 등 전반적으로 동의함
 - 다만, 중앙자산키움펀드 관련 발제내용 중 최근 동향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했고, 자활자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함
 - 그리고, 토론문 앞부분에 자활사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자금(자활자금+중앙자산키움펀드) 활성화에 대한 환기를 위해 ‘1. 자활과 사회적경제&사회적금융’이라는 파트를 추가함
-
- 토론문에서는 자활자금과 중앙자산키움펀드를 통칭하여 ‘자활 자금’이라 함
 - 자활 자금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므로, 지자체 자활자금, 개발원 중앙자산키움펀드는 모두 자활사업 활성화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향해야 함
 - 그렇다면, 현재 자활자금과 펀드 사용용도의 중복 등 한계는 점차 개선하면 된다고 판단됨
 - 공공 운영(지자체) 자활자금, 민간 운영(개발원) 중앙자산키움펀드는 **각각의 자금 특성을 잘 살리는 역량있는 자금 운영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아야 할 것임**
 - * 특히, 개발원은 자금 배분의 공정성, 운영의 투명성, 사업운영의 전문성, 현장의견 수렴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 해야 함
 - 또한 자활현장에서 만들어진 자금이 모여져 다시 자활현장으로 선순환 되어 자활사업이 성장하고, 자활 참여주민들의 자립자활을 돕는 귀한 마중물로 사용되어야 함

1. 자활과 사회적금융 &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기업비교

4

구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법인적	자격		
목적	협동조합 설립 및 활동 촉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지역단위 소규모 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및 탈빈곤 지원
근거	협동조합기본법(2012)	사회적기업육성법(2007)	-행안부 지침(20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주대상	이해당사자 및 취약계층	취약계층	지역(마을)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간지원조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16개소		권역별 마을기업지원센터 15개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개소 광역자활센터 16개소
지원제도	.협동조합 설립지원 및 인큐베이팅 .교육, 홍보사업 등 .판로개척 지원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구매 지원 .협동조합종합정보 시스템 운영 등 * 직접 재정지원 없음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지원 .법인세/소득세/취득세 세제지원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사회적기업 인건비, 사업개발 등 재정지원 .사회적기업가 육성, 경영컨설팅, 판로 등 경영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마을기업 사업비, 컨설팅 지원 등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및 신규모델 발굴, 확산, 경영 컨설팅, 멘토링, 판로개척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자활기업 창업자금, 전세자금, 자활근로 참여 수급자 인건비, 자활기업 운영비, 사업비 등 재정지원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사업개발 및 평가, 기술·경영 지도 및 창업지원 등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관련법 흐름

- 2016. 10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 (바른정당 / 유승민 의원 등 15인)
- 2016. 8.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핵심 3개 법안 동시발의 (더불어민주당/윤호중 의원 등 27인)
- 2014.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논의 본격화
 - (새누리당) 2014.4.10 사회적경제기본법안 공청회
 - (새정연) 2014.8~9 사회적경제기본법안 공청회
 - (정의당) 2014.11.11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발의
- 2012.12.1 시행 협동조합기본법(기획재정부)
- 2012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인증추천 제도
 - * 2011.6.9,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의 겸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각 부처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결정
- 2010. 6. 8 시행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
- *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 2010년 시범 도입된 '자립형 지역 공동체 사업'에서 2011년부터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마을 기업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
- 2007.7.1 시행 사회적기업육성법 (고용노동부)
- 2000. 10. 1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건복지부)
 - 저소득층 지원, 마이크로크레딧, 자활기업

자활사업을 시작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발전

우리나라 사회적금융 흐름

- 2019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
- 2016 : 성북구 및 화성시 사회적금융 융자사업 시작
- 2013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사업 시작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 2012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사업 시작
- 2009~2011 서울시 희망드림뱅크(마이크로크레딧) 운영 / 2011년 폐지
- 2010 미소금융중앙재단 설립(현. 서민금융진흥원)
- 2009 보건복지부 희망키움뱅크 (저소득층 창업자금 융자사업/약 280억원 집행)
 - * 전국 22개 수행기관 선정(지역자활센터협회, 광역자활센터 등 다수 참여)
- 2005~2008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융자사업
-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포함
 - 신나는조합 한국 최초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시작 (저소득층 공동체 창업자금 융자)

자활기금, 희망키움뱅크를 시작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발전

사회적경제발전, 사회적금융 토대있어야 가능

7

✓ 그라민뱅크(방글라데시)

- 빈곤문제 해결
- 마이크로크레딧(무보증 무담보 소액대출)→사회적기업 확장

✓ FRANCE ACTIVE(프랑스)

- 성격 : 마이크로크레딧 보증단체+투자자단체/NGO
- 재원 : 주정부 18%, 지방정부 29%, 펀드예금 19%, 유럽연합 15%, 개인조합원 등 19%
- 보증율 : 대출액의 70%(최대한도)
- 대상 : 근로빈곤층, 이민자, 은행구좌없는 젊은층, 사회·가족적 문제 소지자

✓ 몬드라곤협동조합(스페인)

- 협동과 연대, 결사체+사업체
- 라보랄 쿠차(노동인민금고), 오이나리(협동조합 보증기관)
- 현재 별도 금융 지원 재단(Gaztempresa Foundation)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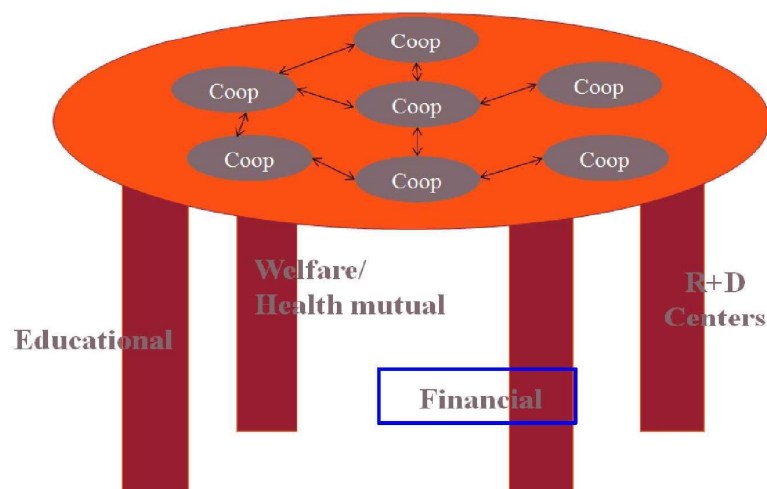
✓ 퀘벡 사회적경제(캐나다)

-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민관 거버넌스 구축
- RISQ, 피두시 등

사회적경제발전, 사회적금융 토대있어야 가능

8

✓ 몬드라곤협동조합(스페인)의 4개의 다리



9

사회적경제발전, 사회적금융 토대있어야 가능

✓ 캐나다 퀘벡, RISQ와 Fiducie

RISQ (1997)

- 설립배경
 - 모든 발전단계의 기업 : 예비창업기, 초기창업기, 합병, 확장, 발전기, 회복기
 - 모든 재정적 수요 충족 : 연구개발, 취득, 건축, 설비, 운영비 등
 - 모든 분야 지원 : 건강, 서비스, 장례, 대중매체
- 설립 재원
 - 퀘벡 주정부 500만 달러, 민간투자 500만 달러
- 대출기간 : 5~8년, 평균적으로는 2만~5만 달러 정도 대출 받음

Fiducie (2006)

- 설립배경
 - 일반금융권 고금리(10~15%)와 단기간 상환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 해소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본화 비율 제고,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15년 장기대출 상품 개발
- 설립재원
 - 노동자연대투자기금 3천만달러(연6%), 캐나다연방정부 2천만달러), 퀘벡주정부(1천만달러, 연금리 5%/최초 5년 무이자/나머지 금리협상)
- 15년 무이자 거치기간을 두어 기업의 자본화 비율을 제고하도록 도움
- 대출상한선
 - 운영자금 \$50,000~\$250,000, 부동산 대출 \$50,000~\$1,500,000

10

사회적경제발전, 사회적금융 토대있어야 가능

✓ 캐나다 퀘벡, RISQ와 Fiducie

RISQ

- 주 정부가 투자손실액 보존
 - 투자손실액이 증가하면서 최근 주정부가 추가로 5백만달러를 지원함.
 - 즉, 손실이 커지더라도 RISQ가 사회적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하여 손실분을 지원하고 있음
- 용자기업에 대한 금융분석방식 개발
 - 목적 : 객관적인 심사 및 성과 평가
 - 전문가를 통해 대출을 위한 재정 분석 및 대출 이후 경영성과 분석 진행

Fiducie

- 적극적인 투자자 개발
 - 투자자의 주식 상장 등이 어려운 대신 사외이사 참여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를 넓히는 방식으로 운영
 - 투자자들에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 투자자 개발
- 상환관리의 유연성
 - 의무보증 최소화 및 상환 유예 등으로 기업 상황을 충분히 반영

사회적경제 발전, 민-관 협력 중요

✓ 캐나다 퀘벡, 사회적기업 사례

■ 라 토후

- 몬트리올 시 정부 : 생 미셸 지역 99년간 1달러만 받고 토지 임대 지원
 - * 생 미셸 지역 : 석회석 광산이 있던 곳으로 80년대 이후, 광산 산업의 쇠락하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
- 개별 지급되던 환경피해보상액을 모아 매립지를 활용한 메탄가스 공장을 세우고, 발생한 수익으로 지역 고유의 산업인 '태양의 서커스(연 매출 1조원)' 설립
- 친환경공원으로 개발 중

■ 테크노폴 앵거스

- 철도노동자들의 실업문제, 지역경제의 몰락 등의 문제 해결
- 지속가능한 지역재생을 위한 지역부동산개발 사회적기업
- CP철도산업단지로부터 토지와 폐업한 공장건물을 사들여 친환경적 커뮤니티 비즈니스 공간 구축
- 전체 부지를 10개로 나누어 자본이 확보될 때마다 1구역씩 매입하여 현재 진행 중
- 최초 매입이 1999년, 시간이 지나도 매입가를 올리지않음
- 테크노폴앵거스의 건물관리 : 사회적경제기업 제한적 입찰참가

2. 발제문에 대한 의견

발제문에 대한 의견

1

- (발제문) 기금 적립 측면
 - 기금 적립에 대한 대내외적인 관심 증대, 지자체 부정적인 인식 등 펀드 계속 유지 대외적으로 쉽지 않음
 - 명확한 법적 타당성 확보 필요
- 중앙자산키움펀드는 기금의 성격이 아니므로, 기금 적립이라는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음
- 중앙자산키움펀드의 법적 근거 존재 (아래 내용 참고)
- 보건복지부의 펀드 지속 운영 방침 및 자활현장 펀드 유지 의견 다수 (물론 운영 개선 요구 의견 있음)

- 개발원, 중앙자산키움펀드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 법적 근거 있음
- 1) 중앙자산키움펀드(이하 중키펀드) 운영 관련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제1항 제9호, 제10호*에 따라 개발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활사업 수행 가능
 - * (9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활 관련 사업, (10호)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2)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에 따라 엄격 집행, 관리 중
 - 중키펀드 집행, 관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실시라고 명시 (23 자활사업안내 100p)
 - 자활근로사업 표준위탁계약 제12조*에도 개발원의 중키펀드 관리 주체 명시
 - * 자활사업 안내, 매출금 관리 지침에 따라 수익금 관리해야 함
- 3)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 지침의 법적 성격
 - 자활사업안내의 법적 성격은 행정규칙임
 - 즉, 복지부장관이 국가와 지자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역자활센터 등이 자활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처리 지침을 명시한 행정규칙으로써 법적 근거가 명확함

발제문에 대한 의견

2

- (발제문) 기금 적립 관련 문제 : 매칭금 부족으로 사업 신청 어려움 발생

- 중앙자산키움펀드 공모사업 중 매칭이 필수요건인 사업은 '사업장환경개선사업',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사업 ' 등 2개인데,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사업은 지자체 신청이므로 현장의 문제는 아님. 그리고, 자활사업인프라 구축사업은 100% 지자체 소유권을 인정하므로 매칭 있어야 함
- '사업장환경개선사업'의 매칭비율은 1:1인데 자부담은 활성화지원금, 자활기금, 후원금 등 국고 사업비 외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자활기금 활용 제고와도 관련 있는 것이므로 매칭 삭제가 바람직한 지 고민 필요
- 매칭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전년대비 신청 및 지원 규모 대폭 확대되어 대다수는 매칭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현황) 사업장 환경개선사업 (22년 2,171백만원 지원 → 23년 4,248백만원 지원 : 전년대비 지원 규모 96% 증가)
- 다만, 23년 사업 평가시 매칭 불가 사례 파악하여 개선책(비율 하향 등) 마련

발제문에 대한 의견

15

3

- (발제문) 운영측면 문제 1 : 시의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
 - 자활기업 창업자금 연 6회(거의 수시), 경영관리지원사업(1회→4회 공모 전환)
 - 중앙자산키움펀드사업 초기 3년(21년 이후)은 사업 이해도 부족, 사업 공모시기 미안착 등 한계 있었으나, '23년 공모사업 설명회, 광역자활센터별 광역 단위 홍보 등으로 개선 중
 - 다만, 공모사업의 특성상 수시 접수 및 지원은 예산 및 인력 비효율로 적절하지 않음

4

- (발제문) 운영측면 문제 2 : 지역별 수요 발굴 문제
 - 규모화, 우수 자활기업 선정 등 전국단위 사업 제외하고
 - 광역별 수요발굴 및 밀착지원이 필요한 사업(8개) 광역자활센터로 이관 완료
 - 사업 수요 및 지원 실적 증가
 - * (사례) 경영관리지원사업 ('22년) 145백만원→ ('23년) 289백만원(1~2차 결과, 3~4차 공고 남음)

발제문에 대한 의견

16

5

- (발제문) 개선방안 : 개발원-광역자활센터 역할 재정의 필요

- 연차별, 단계별로 광역자활센터 역할 확대 추진 중
- (추진경과) '21년 복지부 차관 간담회 계기로 센터협회-기업협회-광역센터협의회-개발원 등 4자 협의체 구성하여 각 인프라별 역할 정립 논의. 특히, 광역자활센터를 자활기업 전문지원 기관, 광역단위 사업 규모화 지원 등 중간지원기관으로서 역할 명확화
- ('22년) 중앙자산키움펀드 사업 일부(3개) 광역자활센터로 이관해 중앙-광역 간 역할 정립
- ('23년) 중앙자산키움펀드 사업(8개) 광역자활센터 이관 완료
 - * 자활사업단, 자활기업 지원(6개), 자산형성지원사업(1개), 자활기업 창업교육(1개)
 - ** 자활사업단, 자활기업 지원 사업 중 개발원에 남은 사업은 전국 단위 공모***사업뿐임
 - *** 우수 자활기업 선정, 우수 자활생산물 선정, 규모화 및 협업지원사업, 지역특화자활사업

발제문에 대한 의견

17

6

- (발제문) 중앙단위 사업 결정, Top-down 방식이 아닌 사업 운영 필요

- 중앙자산키움펀드 적립금 확대 된 '20년 이후 신설된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기업 사업은 모두 현장의견 수렴하여 계획된 사업임
- 물론 사업비 매칭등 운영방안은 현장 개선의견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사업아이템은 현장수요 적극 반영함
- 중앙자산펀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센터협회, 기업협회 각 협회 사무총장 참여 중
- 현장 요구 반영 연도별 사업비 대폭 확대
: (20) 20,505백만원 → (21) 23,355백만원 → (22) 41,734백만원 → (23) 45,179백만원
* '23년 펀드사업 예산 총액 '20년 대비 24,674백만원(120%) 증가

3. 자활기금 운영 개선

자활기금 운영 개선방안

1

■ 자활기금 중 일부 대손충당금 적립 가능해야

- 캐나다 퀘벡 주정부가 'RISQ' 투자손실액을 보존하는 것과 같이 원금 손실액에 대한 대손충당 상한선 검토 필요
- 지자체 공무원,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1순위 '손실에 대한 책임완화'

2

■ 자활기금 중앙위탁 추진

- 제2차 자활급여기본계획 과제로써, '23년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실시 예정
* '21년 감사원 감사시 공무원 설문조사에서 중앙위탁의사있는 곳 91개소)
- 단, 중앙위탁 조건으로 원금 보존은 불가, 위탁 수수료 수준 등 검토 필요

3

■ 자활기업 지원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자활기금 조례보다 중요한 것은 자활기업 지원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자활기금을 활용하는 것이어야 함

4

■ 중앙자산키움펀드 중 일부 지자체 배분

- 현재 중앙 적립 비율(30%)을 줄여서 지자체로 직접 적립한다면, 사용하지 않는 원금으로 적립될 가능성 높음
- 따라서, 중앙 적립 → 당해 사용계획 검토 후 지자체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

4. 중앙자산키움펀드 중요성 및 향후계획

1. '자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안착 중요

❖ 펀드 - 자활기업 지원 규모 비교

- (펀드) 2019년 4분기 이후 사업단 매출액 중 30%를 중앙자산키움펀드 적립하면서 자활기업 지원사업 대폭 증가
 - 2019년 : 신규사업 없이 기존 사업 수행으로 지원규모가 크지 않음
 - 2020년 : 신규사업 추진이 9월부터 이루어졌으며, 2021년부터 본격 사업 확대
- (자활기업) 당해 집행 총액 대비 자활기업 지원비율 낮음
 - 연도별 지원금액 편차가 커서 지원 예측 어려움
 - '21년은 당해 조성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활기업 지원 포함 집행을 낮아짐

❖ 자활기업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자활기업	집행금액	2,431	3,342	6,205	5,533	4,698
	총액 대비 비율	17	16	17	16	14
중앙자산 키움펀드	예산금액	-	-	2,080	8,777	10,781
	총액 대비 비율	-	-	-	75	45

1. '자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안착 중요

❖ 자활기업-사회적기업 지원제도 비교

- 기업수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국고예산부재로 인한 자활기업 안정적 지원 가능 자원 부족

* 자활기업 1,012개(22년 말 기준), (예비)사회적기업 5,105개(23년 3월말 기준)

구분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국고	중앙자산키움펀드('23년)	
창업육성지원		없음	창업자금 지원 8,076백만원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연간 800팀 육성 지원 -(23년 예산) 국고 28,936백만원
창업 후 지원	(한시적)인건비 지원	국고예산 없음 지자체 자활기업 활용	-	-(예비)사회적기업 최대 5년 지원 -(23년 예산) 국고 76,010백만원
	전문인력 지원	국고예산 없음 지자체 자활기업 활용	3,141백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최대 5년 지원 -(23년 예산) 국고 17,520백만원
	사업개발비	국고예산 없음 지자체 자활기업 활용	5,007백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최대 5년 지원 -(23년 예산) 20,216백만원
	사회보험료 지원	-	-	-기업주 부담금 지원, 최대지원기간 4년 -(23년 예산) 국고 9,847백만원
	경영컨설팅	국고예산 없음 지자체 자활기업 활용	320백만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수행 -(23년 예산) 3,548백만원
	판로 지원	국고예산 없음 지자체 자활기업 활용	331백만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수행 -(23년 예산) 국고 4,068백만원
판로 지원	예산	국고예산 없음 지자체 자활기업 활용	331백만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수행 -(23년 예산) 국고 4,068백만원
	인력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전담인력 없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계약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판로지원팀 12명
판로 지원	우선구매 시스템	없음	없음	-Restore 36.5, 구축 및 운영 -온라인상품몰, 우선구매실적관리 등

1. '자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안착 중요

- 제2차 자활급여기본계획 과제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에 큰 기여
 - * 창업 중심 → 창업-성장-성숙단계로 확장
- (사업 수) '19년 대비 8개 사업 신설
(19년) 5개 사업 → (22년) 13개 사업
- (예 산) '19년 대비 22,737백만원 증가 (12배 증가)
(19) 2,080백만원 → (20) 8,777백만원 → (21) 10,781백만원
→ (22) 22,622백만원(41,734백만원 중 54%) → (23) 24,817백만원(45,179백만원 중 55%)

구분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	창업	자활사업단(기업)경영관리지원	· —	—	—	→
	단계	자활기업창업자금(초기창업인센티브 지원)	· —	—	—	→
	성장	공인인증(IACP 등) 지원	· —	—	—	→
		판로지원(온오프라인입점지원, 사회적경제박람회지원)	· —	—	—	→
		신용보증기금융자보증	· —	—	—	→
		자활생산품 경쟁력강화사업	· —	—	—	→
	성숙	규모화및협업지원사업(자활기업컨소시엄, 최대1억원)	· —	—	—	→
		자활기업경영위기관리사업(코로나9피해기업지원, 22년종료)	· —	—	→	
		자활기업사업개발비지원(기업당 최대5천만원)	· —	—	→	
		자활기업전문인력지원(기업당1명지원, 최대5년)	· —	—	→	
	성숙	우수자활기업선정(기업당2천만원포상, 장관인증서발급)	· —	—	—	→
		우수자활생산품 선정및품질개선지원	· —	—	→	
		자활사업활성화인프라구축지원(기초, 광역지자체신청/최대5억원)	· —	—	→	

2. '자활사업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마중물

목적

- '19년 4분기부터 사업단 매출액의 30%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적립한 가장 중요한 이유
 - 자활사업의 근간인 공동체 정신에서 출발
즉, 순이익 등 경제적 성과와 상관없이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가치있는 자활사업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초지자체별 적립이 아닌 30% 중앙 적립 결정
 - 지자체 자활기금의 집행을 저조를 극복할 다양한 사업운영 주체(개발원) 필요
* '22년 감사원 감사 시 자활기금 집행률 저조 및 중앙위탁 미추진 지적

현황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재개
 - '2018년 자활기업 공동작업장 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하고도 사업 폐기(소유권 문제)
 - 지역자활센터 건립 및 자활기업 공동인프라 건립 지원사업으로 '22년 신설
 - '22년 예산지역자활센터 등 4개 센터 건립 지원
* 투입예산(1,998백만원) 대비 지자체 예산 5,805백만원 (2.9배) 매칭
- '사업단 환경개선 사업' 지원 확대로 신규사업 추진 활성화
 - 자활 집중육성사업 '다회용기세척사업*' 등 신규사업단 규모화 적극 지원
* 사업장 전년대비 182% 증가, ('21년) 17개소 → ('22년) 48개소
일자리 전년대비 180.2% 증가, ('21년) 269명 → ('22년) 754명
** 자활근로사업단(2,790개) 개소당 평균 일자리(10.1명)보다 55.4% 많은 15.7명 고용
- '자활센터 시설개선 사업' 신설로 취약계층 이용 공간 인프라 개선
 - 수급자 등 상담, 교육, 휴게공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공간 조성 등

3. 위기 극복 등 중요 자원으로 활용

- ❖ 코로나 19 시기 긴급자금으로 활용 : 자활기업 경영위기관리사업 약 45억원(21~22) 지원
 - * 매출감소 기업의 경우 신청 시 전수 지원
 - 이 결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활기업 2년 유지율 향상 (21년 76.3%→22년 87.3%)
- ❖ 코로나 19 대응 온라인 교육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참여자 및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 ❖ 자활사업 참여주민 실무역량강화를 위한 직무 실습장 구축

4. 현장 의견 적극 반영, 지속적으로 개선

- 본격 사업 개시 3년차로 사업 운영체계 안착 및 집행을 제고
- 광역자활센터 기능 및 역할 강화 : 효율적 사업 운영 및 지역밀착 지원 강화
 - * 자활기업 창업자금, 사업개발비 등 8개 사업 직접 수행
- 사업 운영방안 지속 개선 중
 - 개발원-센터협회-기업협회-광역자활센터협의회 등 4개 주체 정기회의 : 실무총괄(연4회), 대표자(연2회)
 - 개발원-센터협회, 개발원-기업협회 : 각각 월 정례회의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창업자금	운영자금: 사업단별 매출액 반영하여 한도액 계산	운영자금 : 최대 1억원 지원
사업장환경개선	사업비 및 임대보증금 합산 최대 5천만원	-기존 사업단 : 사업비 및 임대보증금 각각 최대 5천만원 -신규 사업단 : 사업비 및 임대보증금 각각 최대 5천만원 * 규모있는 사업단 설립 지원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신규사업개발및기존사업업그레이드와 직접 관련있는 사업비만 지원	- 신규사업이 없더라도 노후된 장비교체 가능
경영관리지원사업	기업(사업단)별 최대6회, 회당 25만원 지원/연1회공모	-기업(사업단)별 최대 10회, 회당 30만원 지원/연4회공모
지역특화자활사업	광역자활센터당 최대6천만원, 단년지원	-광역자활센터 당 최대 1억원, 동일사업 최대 3년 지원
자활센터 시설개선사업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사업 부재	-'22년 사업 신설 -'23년 종사자 사무공간 개선도 지원범주 포함
우수 자활기업	-사업비 지원 * 사업개발비 등 사업지원 다수 신설	-포상금 지원 (1기업당 2천만원)

5. 향후 운영 개선(안)

- 펀드 운영 투명성 강화 : 운영시스템 개선으로 수입-지출 흐름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추진
- 중앙자산키움펀드 운영규정 개정 : 명칭 개정(자산, 펀드 등 용어가 주는 오해 소지 불식)
- 자활사업 안내 지침 개정 : 펀드 사용범위 명확화
- 펀드 활용범위 확대 : 종사자, 참여자 지원 프로그램 추가
 - 사용 범위 : (현재) 자산형성, 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 → **(확대) 센터 종사자, 자활사업 참여자**
 - *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자활사업 참여자 사회정서적지원 프로그램 검토 중
- 펀드 공모사업 집행률 제고 : 공모 횟수 확대, 사업 홍보 강화, 광역자활센터 지원대상 선제적 발굴 등

5. 대전·충청지역 지원 사례

자활의 상상, 현실이 되다

(사례 1) 자활 규모화 및 협업지원 사업: 자활기업-사업단 협업 분야

→ 단독신청 X, 2개 이상 자활기업, 사업단, 사회적경제기업 컨소시엄 신청

→ 최대 3년 지원 가능(전년도 사업 성과 판단), 1년 최대 1억원 지원 가능

■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활 배송 인프라 구축사업

- 식사영양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

*** '22년, '23년 2년 연속 지원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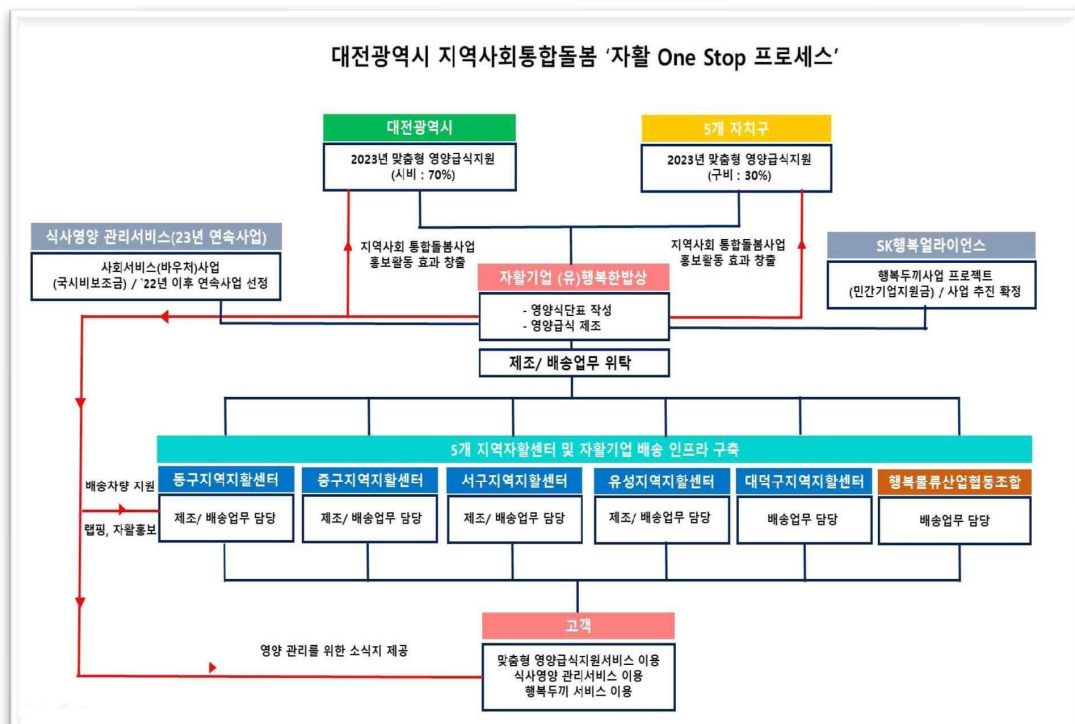
- 참여기관: 행복한 밥상, 행복물류산업협동조합,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행복배송사업단)

*** '23년 협력기관 확대: 대전 동구, 중구, 대덕구, 유성지역자활센터(배송·제조 역할)**

- 각자 노하우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상생 및 규모화 실현

- 사업성과: 이용고객 증가, 고객만족도 증가, '식사영양관리서비스' '23년 연속 수탁

❖ 탄탄한 민-관, 민-민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고도화 선도



자활의 상상, 현실이 되다

(사례 2)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사업

- 지역자활센터 신축, 자활기업 공동작업장 등 구축 지원 (최대 5억원 지원)
- '22년(예산, 정선, 성주지역자활센터), '23년(철원, 하동, 담양, **홍성**지역자활센터)

▶ 홍성지역자활센터 구축 사례

〈 불편, 비효율, 실곳은? 〉

〈 쾌적, 효율↑, 오롯이 씬 〉



- ▶ 홍성지역자활센터 구축 사례 : 연면적 1454㎡(지상 3층, 지하 1층)
- 사업단 4개소,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정면1〉



〈정면2〉



〈측면〉



〈뒷면〉

“잘한다 잘한다” “자란다 자란다”



토론3

「현장과 함께 현장중심 자활사업 운영을 위한 자활기금 활용방안 찾기」

송유정 / 자활기업 휴먼케어 대표

2023 찾아가는 대전충청지역 자활정책포럼

현장과 함께 현장중심 자활사업 운영을 위한 자활기금 활용방안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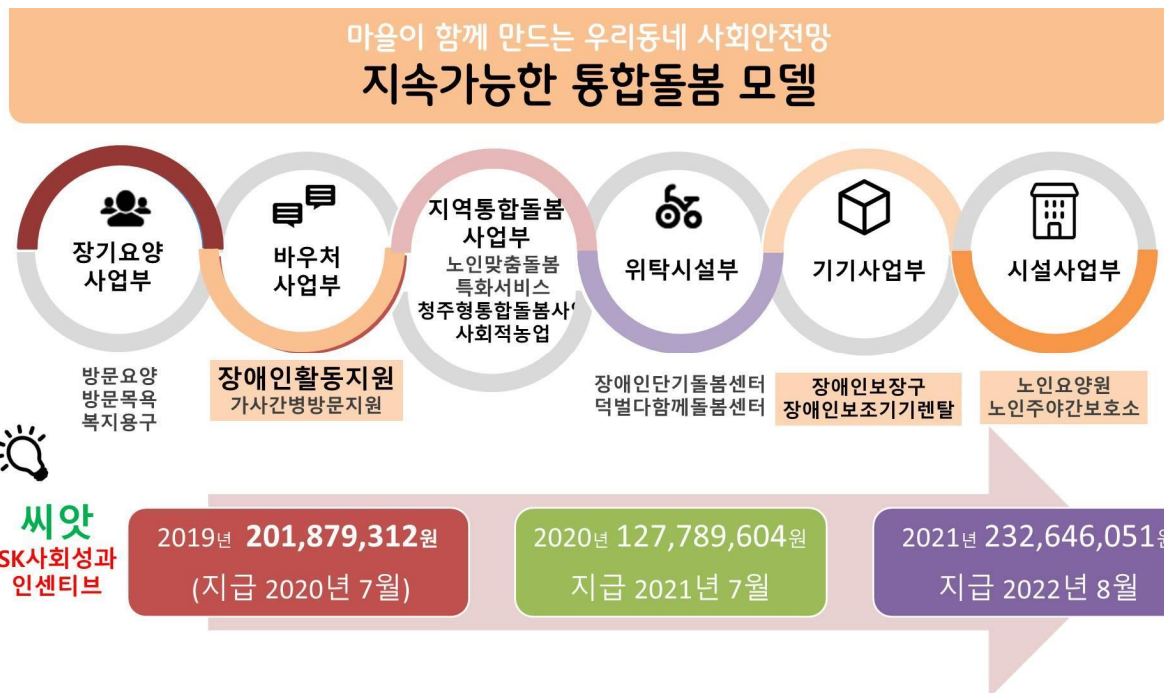
사회형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사례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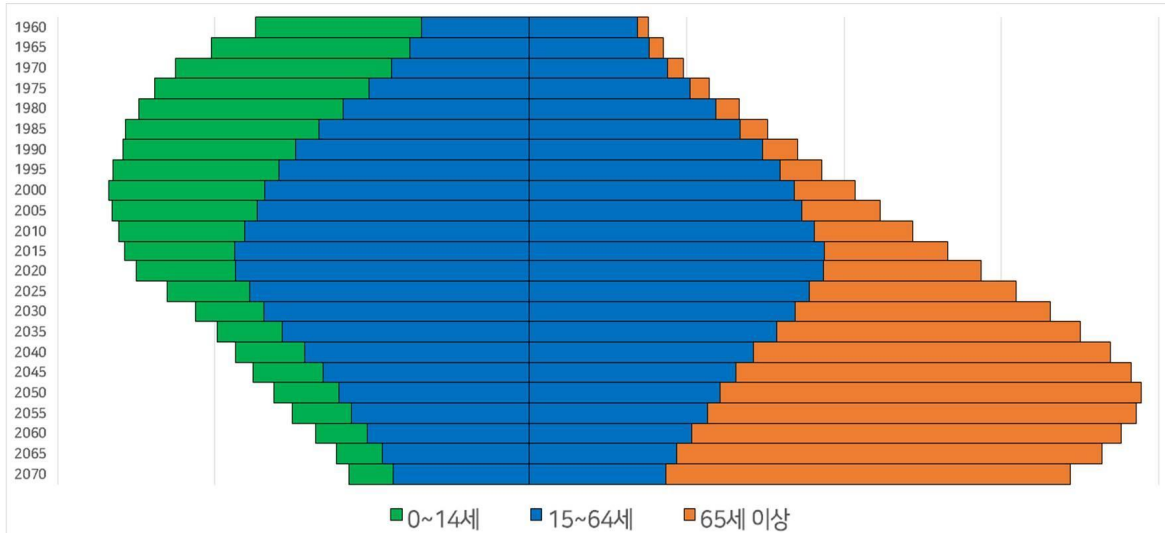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가 걸어온 길

사회적협동조합 | 휴먼케어

- 2008. 1. 청원군 **자활기업** 인정. 돌봄서비스공동체 휴먼케어
- 2008. 5. 주식회사 휴먼케어 법인 설립
- 2008. 7. **사회적기업 인가** (자활 진영 최초 돌봄 사회적기업 인가/2008-50호)
- 2010. 3. 의료기기임대판매업 신고
- 2013. 11. 법인 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 휴먼케어요양원 (지점)
- **2019. 4. 사회적협동조합 조직 전환** (보건복지부)
- 2019. 6. 공동모금회기획사업 마을협동화사업 (우리동네 거점돌봄센터 동네북)
- 2019. 12. **청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권역센터 지정**
- 2020. 6.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 2022. 6. 휴먼케어요양원 신축 이전 개소
- 2022. 7. [청주시장애인단기돌봄센터] 개소 - 2021. 12. 청주시 위탁 선정
- 2022. 7. 협동조합베스트어워드 사회서비스 부문 **우수** 선정
- 2022. 8. [청주시덕벌다함께돌봄센터] 개소 - 2021. 6. 청주시 위탁 선정



인구구조적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자활사업



자활기금

○ 목 적 :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 지원

○ 재원조성 : 시출연금, 이자수입, 보장비용 징수금, 자활 수익금 등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

○ 기금 용도

-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 자금 및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등

-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청주시 자활기금 운용 현황 (2005년 설치)

(2023. 2. 28 기준)

예탁기관/예금종류	금 액	비고
계	2,867,920,953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1,821,843,060	예산과 관리
공급예금	1,046,077,893	

(단위: 천원)

※ 사업자금: 230,000천원, 점포임대보증금: 578,000천원

종 별	채무자	기 간	채무액	비 고
	계		808,000	
사 업	한울협동조합	'18.11.12 ~ '28.11.12	30,000	자활기업
자 금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21.04.29 ~ '31.04.29	200,000	자활기업
점 포 임 대 보증금	청원자활(면사무소)	'18.08.01 ~ '24.08.01	20,000	자활사업단
	청주자활(꿈의공간들)	'18.08.08 ~ '24.08.08	20,000	"
	청원자활(더모아)	'19.03.13 ~ '23.03.12	30,000	"
	청원자활(사무실)	'19.05.23 ~ '23.07.16	400,000	지역자활센터
	청원자활(이음공간)	'19.09.11 ~ '23.08.31	30,000	자활사업단
	청주자활(더담아유)	'20.05.01 ~ '24.04.30	25,000	"
	청주자활(벤티스)	'20.10.01 ~ '24.09.30	30,000	"
	청원자활(이미용전문)	'22.03.01 ~ '24.02.28	20,000	"
	청원자활(신박한정리)	'22.05.01 ~ '24.04.30	3,000	"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자활사업의 자금 원천과 자활기금의 효과성

대출처	대출 금액	대출 일자	대출기간	대출 이율	2022년 원금및이자	대출잔액	2023년 원금및이자
사회가치연대기금 - 자산화사업	3억	20.10.2 6	2년거치 2년상환 (24.10.26)	3%	183,333,340 (원금+이자)	1억8천3백만 원	원금99,999,960원 이자3,154,920원
청주시청 자활기금 -사업자금	2억	21.04. 29	5년거치 5년상환 (31.04.29)	1%	2,000,000 (이자)	2억	이자2,000,000원
농협대전시청지점 - 신용보증기금보증	1억	20.07.3 0	3년 (23.07.28.)	1%	429,994 (이자)	1억	원금100,000,000원 이자230,000원
농협대출 - 중진공 대리대출 (시설자금)	15억	22.04.2 8	4년거치 6년상환 32.04.27	3.3% (변동)	17,500,684 (이자)	15억	이자50,000,000원 (변동으로 예정수치) (최초 2.5%-3.5%)
신나는조합	1억	19.07.2 3	3년 22.07.23	2.6%	20,059,439 (원금+이자)	0원	상환완료
SK사회성과인센티 (씨앗자금)	5억	인센티브		-	-		
합계	27억					19억8천3백	252,384,880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경영

1원칙
자율적 개방적
조합원제도

사회적협동조합 | 휴먼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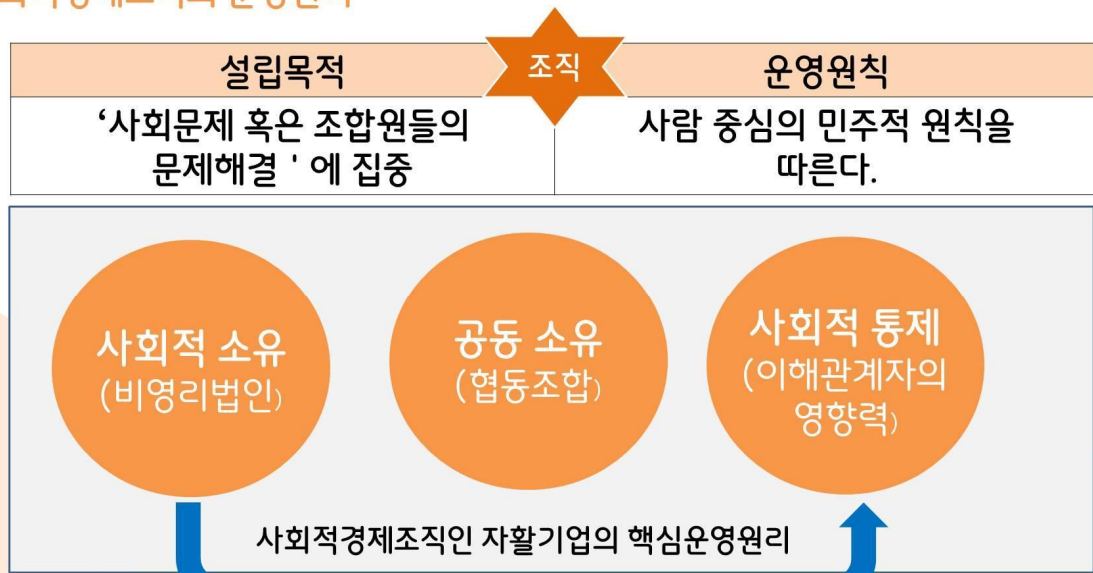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
조합원수	149명	164명	▲15명
출자금 총계	218,870,000원	327,420,000원	▲108,550,000원
정기출자자 수	78명	89명	▲11명
정기출자금 총계	65,030,000원	69,130,000원	▲4,100,000원

유형	인원	출자좌수	출자금	비율	비고
직원 조합원	142명	50,186	250,930,000원	76.6%	
생산자조합원	21명	5,489	27,445,000원	8.4%	
후원자조합원	23명	9,669	48,345,000원	14.8%	
소비자조합원	10명	140	700,000원	0.2%	
계	196명	65,484	327,420,000원	100%	

※ 유형기준

- 생산자조합원 - 퇴사 후 출자 유지조합원
- 후원자조합원 - 지역사회 참여자 1구좌 : 5천원
- 소비자조합원 - 이용자 중 조합원 가입자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원리



...

감사합니다

토론4

「자활기금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홍정윤 / 보령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자활기금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홍정윤(보령지역자활센터장)

1) 자활기금 및 자활지원사업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 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성. 운용하는 기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미비하고, 지역별 편차도 큰 실정이다. 자활기금은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기금의 조성. 활용은 필수이며 2000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자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남도. 세종지부 자활기금지원 조례 제정 도.시.군을 살펴보면 제정 된 지자체는 천안을 비롯하여 10개 센터, 기타(통합재정안정화기금)1개 센터 이며, 5개 센터는 자활기금 조례가 없으며, 충청남도는 자활기금 조례가 아닌 자활사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자활사업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제4조 ①항에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같은 조 ②항을 보면 ①항에 따라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지역자활센터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다.

- 1) 2023년 자활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p216. 2023년 2월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제③항 에는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3) 제18조 ③항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1.7.27] [[시행일 2022.1.28]]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삭제 [2021.7.27] [[시행일 2022.1.28]]
 5.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인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자활기금은 대부분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18조 ③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자활사업지원 조례에는 충청남도 자활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단의 참여주민이 일자리를 통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자활기금이나, 자활지원조례로 지역자활센터를 평가한다는 것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활기금 활용을 소극적으로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규정이 될 수 있다.

2) 자활기금 조성

자활기금의 조성재원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기금의 운용수익, 국고보조금 등으로 자활기금을 포괄적인 조성 재원으로 두고 있다.

여기서 살펴 볼 것은 자활기금 조성되는 재원이 실제로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김경휘박사의 주제 발표 원고에서 자활기금적립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자활기금은 자활근로사업단 폐업 및 시장형사업단 유지불가 등의 경우 발생하는 재산에 대한 중기펀드와 지자체 자활기금이란 비율 문제 발생되어 현) 중기펀드70%, 지자체 자활기금 30%로 각각이관 되어 적립 되어 지원된다.

많은 부분을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 사업과 관련되어 조성되어지고 있어서 지자체에 적립되어 있는 자활기금의 재원 조성을 각 항별 규모와 기금주체가 어디 인가를 파악하여야 한다. 전부 또는 대부분이 자활근로사업 관련한 매출 수입금에 의하여 조성되었다면,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을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자활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 또한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산형성지원,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자활기업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자활사업 연구, 개발, 평가 등을 위한 비용, 일을 통한 탈수급자에 대한 사회

보험료 지원, 자활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전문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자활기업에 채용된 수급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 사회보험료, 자활기업의 규모화, 유통망 구축,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의 자활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전국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증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장기관(시.도 및 시.군.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관리 운영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가능하다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제2항에 넣어 법제화를 하였다.

자활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시. 군. 구청장은 매년 1월말까지 자활기금운용. 관리. 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2월15일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므로 자활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내실화를 하는 듯 하지만 자활기금의 운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기금의 조성 관련하여 일정 규모 이상 적립되어야 자활지원사업 등을 위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가능하며, 규모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기업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적정규모를 추정하며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시.군.구는 조성 목적 달성을 위해 추가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성 중이라도 기금 활용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적정 규모의 기금 적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증액 및 기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익 증대 등 노력을 하여야 한다. 자활기금이 설치되지 않은 시. 도 및 시. 군. 구는,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자활기금 적립이 필요하다.

이는 자활기금 조성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는 하지만 이자수익을 증대하여 자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자체가 있을까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4) 자활기금 활용 범위보다는 자활기금 사용 범위로.....

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안내에서 자활기금 활용(사용범위로 수정)범위를 자활기금은 수급자. 차상위층의 자활을 위한 비용으로 일정 규모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미 적립된 기금의 50% 범위 내에서 활용하며, 나머지는 기금운용 수익을 위한 기금 증식사업으로 운용(기금증식 사업) 조성액 5억 이하인 경우 조성액의 30% 범위 내에서

4) 2023년 자활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2023년 2월 pp218-227

5) 위 pp219

기금운용 가능규모를 정할 수 있다. 사업자금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범위에서 30% 추가 활용 가능, 출연금, 이자수익 등으로 운용 재원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 자활기금이 적정 규모로 적립되었으나 활용

실적이 없는 시.군.구는 기금 활용 제고를 위해 자활지원사업 추진 및 자활기업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이 필요하다. 임종기센터장의 사례발표에서 태안군 자활기금 조례에서 제16조(자활성공수당) ⑤항에 자활참여기관과 탈 수급 유지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최대 2회, 총2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박용훈 센터장의 사례발표에서는 지역자활센터 및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A형 간명 검사 및 예방접종 지원의 내용이 있다. 사례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욕구가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 및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활기금은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활기금이 일정 규모로 적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업을 활동적으로 진행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으므로 자활기금 사용의 적정성 검토와 자활참여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활근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자활기업 창업 및 내실화, 참여주민 취업 등의 인과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5) 중앙자산키움펀드

보장기관(시.도 및 시.군.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관리 운영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가능하다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제2항에 삽입하였다.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근로사업 매출금에서 조성되는 재원으로 자활기금(시.도 및 시.군.구), 중앙자산키움펀드(한국복지개발원)가 있다. 현재 중기펀드의 재원은 지역자활센터 매출금의 30%, 자활근로사업단폐업 및 시장형사업단 유지 불가등의 상황에 발생한 재산의 70% 그리고 이자소득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런데 김경휘박사의 주제발표에 지적하였듯이 중기펀드의 주요재원이 시장형사업단 유지 불가 및 폐업 시 발생하는 재산,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매출금에서 발생한 기금 임에도 개별센터가 일부 중기사업 신청 시 요구되는 매칭금이 없어서 중기펀드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하며, 일부센터는 신청시요구되는 매칭금을 매출액의 70%로 적립되는 활성화지원금으로 매칭을 하기도 하나, 이 역시도 일부센터에 한정 된 상황이어서 지역적 고유특성 및 개별센터의 요구를 반영한 펀드활용이 어려움이 되고 있다.

중앙자산키움펀드 사용용도를 살펴보면 개발원 및 광역자활센터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신규 사업개발 및 규모화로 지역의 자활사업 활성화를 견인하고, 인정 자활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저소득층 사회적경제 운영 지원, 중앙자산키움펀드 사업계획을 수행함에 있어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은 물론, 집행율 제고로 궁극적 성과달성을 도모, 광역자활센터 운영 사업 확대에 따른 관리방안 등에 사용된다. 2023년 사업 총괄표를 보면 6개 영역(자산형성, 창업자금, 활성화지원금, 지역균형발전자금, 중앙운영비(사업총괄운영인력), 광역운영비(사업운영펀드운영인력)의 23개의 사업이 진행된다.

재원 구성과 관련하여 중앙키움펀드의 사용에 대한 적합성을 점검하여, 발표자가 제안한 지자체와 지역자활센터가 인식하고 있는 중키펀드 기금 적립방식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여야 하며,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업 신청 시 지역자활센터에 요구되는 매칭금 삭제 및 비율을 낮추는 등에 대한 전격적인 논의 또한 필요 해 보인다. 이를 위한 중키펀드 심의위원회에 함께 실무단위에서 논의 할 수 있는 실무구조도 새롭게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주제 발표자의 제안에 공감이 간다.

한 가지 더 제안 한다면 현재 매출액 정산의 중앙자산키움펀드 정산을 30%을 중앙자산키움펀드 15%, 자활기금 15%로 조정하여 자활기금 조성금을 늘리고 각 지자체에서 자활참여주민의 자활 활성화 사업에 지원 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

자활기금 이나 중앙자산키움펀드의 구성과 사용은 저소득 자활참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쓰여 져야한다.

6)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 [본조개정 2021.7.27 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18조의7은 제18조의11로 이동] [[시행일 2022.1.28]]

토론5

「자활기금 활성화 방안」

황명구 / 세종사회서비스원 사무처장

자활기금 활성화 방안

1.머리말

- 2023년 찾아가는 대전충청지역 자활정책포럼에 참여할수 있어 영광임.
 - 2000년 청주지역자활센터 지정받아 초기 설립운영의 경험(실장)과 2014년 다시 기관장으로 갔을 때 생각이 남. : ‘참 변화하지 않는구나’ 생각함.
 -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은 제도이었고, 두 번째는 참여자, 세 번째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 그래도 변함없이 지금까지 지켜온 것은 기관장과 실무자의 애정인 것 같음. 2014년에 전국자활에서 가장 고민이었던 것은 지역자활센터의 정체성문제였음. 급변하는 정치변화속에서 가장 위태로웠던 기관이 지역자활센터.
 - 끊임없이 애정을 가지고 헌신하시는 자활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 오늘 ‘현장중심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기금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주제는 참 의미 있어 보임.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내용을 공유하면서 발전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여짐.
 - 본인은 그동안 경험을 중심으로 몇가지 첨언하고자 함.

2.본론

- 먼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현장중심의 자활기금 운영 및 제도적 기반조성을 위한 전략과
 - 과제를 발제해주신 김경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 우리나라 자활기금의 법적근거와 집행현황, 운영현황, 자활기금의 문제점, 자활기금 개선방향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제시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함.
 - 특히 자활기금개선방향에서 지자체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자활기금 활용 제고방안 마련 필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제고, 자활사업단에서 발생한 재산을 나누는 비율에 대한 근본적인 재논의 필요성, 자활기금 활용처 확대 필요, 자활기금 환수에 대한 책임소재 및 환수방안 마련필요, 융자성지원사업에 대한 기준인상제고 등은 참으로 냉철하게 분석 제시하였음
 - 중앙자산키움펀드 개선방향으로 제시한 기금적립방식개선 논의필요성, 지역중심맞춤형 중기펀드운영방향설정, 지역중심 지역자활활성과 기금 지원

논의 필요, 적립된 중기펀드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필요 등을 제시는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제시해 주셨다고 봄.

- 본 토론자는 이와 함께 몇가지 첨언을 하고자 함. 기관, 참여자, 사업단 중심
- 기관(지역자활센터)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임 : 운영, 사업, 참여자자립 측면
 - 기관 : 처우와 환경 열악, 직원 이직율 높고 운영비의 한계로 활성화 어려움
 - 사업 : 아이디어 개발의 한계, 자금부족에 따른 진행의 어려움(좋은 아이디어지만 실제사업 연계성 부족), 리스크에 대한 부담, 참여자의 문제
 - 참여자 : 의식문제, 자립에 대한 부정적 사고, 참여자 모집 어려움
- 3중고의 지역자활센터에게 마중물 같은 것이 기금임. 그러나 제한이 많음
 - 현재 자치단체와 중앙기금에서 모으고 있는 기금의 분배를 조정할 필요성 있음
 - 지역특성에 맞게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함
 - 기금의 활용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
- 기금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 해결 과제
 - 법과 제도의 완화 : 지자체 조례에서 좀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전국지자체 조례가 차이가 많기에 어느 정도 통일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참여자 선정을 유연하게 해야 함. 실제 참여자들 대부분이 수급자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어서 일에 대한 의지나 가능성이 적음. 반대로 노동부 참여자들 중에서도 일의 의지 등 정신적 심리적 문제가 많아 바로 일자리에 투입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음. 차상위 등 노동부의 일자리 신청자중에서 보다 유연한 선정제도를 통해 자활에서 자립의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역자활센터의 환경개선 필요 : 운영비와 인건비, 사업비에 대한 것을 일반사회복지기관처럼 변화시켜야 함.
- 기금활성화를 위한 제언
 - 자활기금이 활성화에 한계를 느끼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제도상의 문제점은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에 동의하면서 실제 바뀌거나 바꾸려고 하는 것은 법과 제도를 만드는 정치인과 행정부 당사자인 듯 함.
 - **(의지문제)**정치인이나 행정부는 예산효율성을 따지면서 실제 자활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음. 또한 실제 자활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거쳐가는 자리와 시간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

- **(수동적사고의 문제)** 자활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행정부는 아주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판단하는 사고가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음. 담당공무원들이 자주 바뀌는 문제로 인하여 실제 자활사업이해도가 떨어지고 이들의 자활기금활용 등에 있어서 소극적 판단을 하기에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임.
- **(자활의 궁극적 목적의식 부재)** 자활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참여자의 자립임. 그러나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제반조건을 맞추고 있는지는 의심스러움. 초기에는 참여자가 많아서 걱정이었음. 그러나 지금은 참여자가 없어 지역자활센터가 어려워함. 이유는 자활사업을 정치적 관점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대상자 선정과정이 들쭉날쭉한 것으로 보여짐. 자활사업의 목적이 자립인 것을 인지한다면 자활기금활용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까 생각됨.
- **(지역특성 미반영)** 자활기금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 도시지역, 농촌지역, 어촌지역 등 참여자의 환경과 여건의 차이가 많음. 이에 따라 사업의 유형도 아주 다양한데 자활사업 및 기금관련 된 것은 융통성없이 동일함. 이에 자활기금의 내용도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지 못함이 활성화를 막고 있다고 보임. 정부에서는 전반적인 자활기금활용방안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만 조례를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전문상담가 활용)** 자활사업의 핵심은 참여자의 자활임. 그러나 참여자의 특성이 자립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 정신적, 육체적, 의료적, 문화적 등 실제 삶의 유지가 어려운 분들이 많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 이전에 위로와 자신삶에 대한 의욕이라고 보여짐. 이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상담과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함. 이런 지원을 할 수 있으려면 참여자를 좀더 가까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전문가가 필요함. 이러한 전문가를 활용할수 있는 예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 상담의 수준이 면접수준으로는 불가능함. 치료적 관점의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요약하면

- 자활기금활성화를 위해서 담당공무원 및 지자체의 자활이해도가 필요함
- 자활기금활성화를 위한 기금운용위원회에 자활전문가가 필요함. 지역사회보장위원회에서 많은 판단을 하지만 실제 전문성이 담보되지 못함(사회복지사도 잘 모름). 대부분 위원들이 자활을 잘 모름. 법상으로 명시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무설치 바람직.
- 자활활성화사업 지원내용을 강화할 필요성 : 보통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사

- 업비 및 임대료지원, 지역자활센터전문성 높이기 위한 연찬회 등 사업지원,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사업 및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자활근로사업단 창업 등 경영컨설팅지원, 사업단 등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사업비, 임대료 지원, 자활기업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자활제품판로개척위한 지원,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교육 등 전문화된 교육지원, 자활참여자의 자활의식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벤치마킹지원(충북조례) - 조례개정을 통해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업, 교육 등 적극적 지원과 참여자의 상담 등 전문가 배치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화해야 함
- 기금 성과관리 강화를 통해 신뢰성 확보 필요함 : 해마다 기금활용의 성과를 분석 보고 논의함으로써 민관신뢰를 쌓아 보다 기금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함
 - 자활기금을 사회복지관련기금과 통합운영하는 것을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건의해야 함
 - 자활기금활용에 대한 통일된 리매뉴얼 개발도 필요함
 - 자활기금활용을 위한 지자체별 민관 TF운영도 새롭게 구상할 필요성이 있음.

○ 마치면서

- 2000년 초기 시작과 2023년 현재, 지역자활사업은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음.
- 여전히 지역자활센터 환경은 어렵고 대상자 자활은 더욱 힘들어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지키고 계신 자활인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 언제나 그랬듯이 모두가 함께할 때 변화는 오는 것 같음.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기를 기원함

부록

「대전·충청지역 지역자활센터&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현황」

대전 / 충남세종 / 충북

대전광역시 지역자활센터&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현황

대전광역시 지역자활센터&광역자활센터

연번	센터명	대표자	연락처	주소
1	대전동구지역자활센터	고철영	042-622-8890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96, 4층
2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김인희	042-221-4021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75번길 16, 2층
3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	김선경	042-527-1654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76, 주원빌딩 5층
4	대전유성지역자활센터	우하영	042-824-1981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30번길 51, 2층
5	대전대덕구지역자활센터	신동호	042-628-972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1길 62, 2층
6	(사)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	김인희	042-257-1890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3, 대림빌딩 801호
7	대전광역자활센터	이현수	042-257-1979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10, 대제빌딩 8층

대전광역시 자활기업

연번	지역	기업명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사업내용
1	동구	(주)대전동구희망물류	동구 상섬동	이미숙	010-4617-7115	정부양곡배송
2	동구	파랑새건축	동구 가양동	박옥순	010-5402-2090	인테리어
3	중구	깨끗한 세상	중구 문창동	이원영	010-8221-0250	청소/소독·방역
4	중구	나우리물류센터	중구 대사동	김상렬	010-4903-1649	정부양곡배송
5	중구	협동조합 마루건축	중구 대흥동	김영훈	010-4168-5847	인테리어
6	중구	사랑나눔간병	중구 대흥동	김금숙	-	인력파견(간병)
7	서구	민들레교실협동조합	서구 용문동	이선희	010-5605-0708	인력파견(학교)
8	서구	행복물류산업 협동조합	서구 괴곡동	이원동	010-7411-7336	정부양곡배송
9	서구	행복전동휠체어 협동조합	서구 용문동	김성수	010-8942-0437	전동휠체어
10	서구	(주)행복이 가득한 집	서구 도마동	임순천	010-3480-9989	인테리어
11	서구	행복자전거협동조합	서구 가장동	최용훈	010-2431-4166	자전거 수리, 재생자전거
12	서구	푸르미세차협동조합	서구 변동	김용안	010-7411-7336	출장 세차
13	서구	눈꽃처럼협동조합	서구 변동	최철성	010-3470-3402	청소/소독·방역
14	유성	유성맛집 민들레집들	유성구 장대동	전화재	010-4356-8822	음식점
15	유성	더 씬,	유성구 원신흥동	이현정	010-2663-8319	카페
16	유성	크린 앤 해피	유성구 구암동	김정일	010-4411-3207	청소/소독·방역
17	유성	굿카페테리아	서구 관저동	한승신 강경원	010-4167-0063	카페
18	대덕구	(주)다운실내건축	대덕구 법동	최재혁	010-9980-1235	인테리어
19	대덕구	(유)행복한밥상	대덕구 비래동	한경이	010-2307-5675	도시락
20	광역	대전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대덕구 법동	최재혁	010-9980-1235	인테리어

II

충남·세종 지역자활센터&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현황

충남·세종 지역자활센터&광역자활센터

연번	센터명	대표자	연락처	주소
1	공주지역자활센터	소진원	041-857-0029	충남 공주시 신기동길 48-8
2	금산지역자활센터	임내규	041-752-7942	충남 금산군 군북면 일흔이재로 112
3	논산지역자활센터	박석현	041-734-1377	충남 논산시 시민로 360번길 7-1, 2층
4	당진지역자활센터	조성민	041-360-3220	충남 당진시 시청1로 38, 당진시종합복지타운 2층
5	보령지역자활센터	홍정윤	041-936-8509	충남 보령시 원동1길 95, 2층
6	부여지역자활센터	강민용	041-832-0811	충남 부여군 합송서로 128-3
7	서산지역자활센터	이화순	041-668-2304	충남 서산 효행6길 19
8	서천지역자활센터	김내현	041-953-2091	충남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41번길 12, 2층
9	아산지역자활센터	이현수	041-546-1814	충남 아산시 시민로 245번길 10, 1층
10	예산지역자활센터	김철민	041-332-5402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66번지 3층
11	천안지역자활센터	조응주	041-552-0350	충남 천안시 서북구 미라8길 3, 4층
12	청양지역자활센터	김은진	041-942-4526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8길 9
13	태안지역자활센터	임종기	041-674-1378	충남 태안군 태안읍 시장5길 20
14	홍성지역자활센터	윤명희	041-631-5815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72번길 41-8
15	세종지역자활센터	윤성웅	044-868-1004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60
16	세종남부지역자활센터	최성숙	044-865-7870	세종시 도움1로 116
17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충남세종지부	소진원	041-852-0936	충남 공주시 신기동길 48-8
18	충남광역자활센터	노병갑	041-415-2006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23, 5층

충남·세종 자활기업 현황

구분	지역	기업명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사업내용
1	공주시	(주)공주돌봄센터	충남 공주시	홍정자	041-857-6001	간병
2	공주시	(주)공주주거복지센터	충남 공주시	남궁기원	041-855-4236	집수리
3	공주시	(주)공주케어	충남 공주시	신지윤	041-853-8002	간병
4	공주시	두빛나래 주식회사	충남 공주시	김지미	010-7514-6230	카페
5	공주시	주식회사 정성온밥상	충남 공주시	이은옥	041-858-6667	구내식당, 카페
6	금산군	고기루	충남 금산군	이숙란	041-752-1979	외식, 음식점
7	금산군	유한회사 금산주거복지센터	충남 금산군	김순태	041-753-9490	집수리
8	금산군	참벗	충남 금산군	김만식	010-7357-5733	농업(버섯재배)
9	논산시	(주)논산주거복지센터	충남 논산시	천은숙	041-733-6604	집수리
10	논산시	(주)오토크린회오리	충남 논산시	유도준	041-733-1376	세차, 청소, 양곡배송
11	논산시	주식회사 반석건축인테리어	충남 논산시	변용오	041-735-9428	집수리
12	논산시	참누룽지	충남 논산시	유경애	041-732-1378	식품생산(누룽지)
13	당진시	당진주거복지센터	충남 당진시	현동석	041-356-0832	집수리
14	당진시	행복드림	충남 당진시	최규식	041-360-3228	양곡택배
15	보령시	(주)보령누룽지과자	충남 보령시	유봉근	041-934-8709	식품생산(누룽지)
16	보령시	(주)본래순대보령점	충남 보령시	최미애	041-934-8909	음식점
17	보령시	따스한손길	충남 보령시	양현미	041-931-8509	간병
18	보령시	행복하우스	충남 보령시	박주필	041-934-1174	집수리
19	부여군	(주)부여복지마을	충남 부여군	김형춘	041-837-0811	집수리, 간병
20	부여군	(주)해드림	충남 부여군	박원금	041-836-0810	양곡택배
21	서산시	(주)해노을	충남 서산시	박준옥	041-668-2304	양곡택배
22	서산시	주식회사 뜬부기모시떡	충남 서산시	김정임	041-668-7588	식품제조
23	서천군	(주)천군만마	충남 서천군	임동환	041-952-2656	청소
24	서천군	주식회사 나눔건축	충남 서천군	김동규	041-953-3626	집수리
25	서천군	주식회사 새날	충남 서천군	강성구	041-956-5535	청소
26	아산시	국짬	충남 아산시	박정희	041-547-1492	음식점

27	아산시	착한식품	충남 아산시	남명현	041-544-1814	제조업
28	예산군	(주)예당택배	충남 예산군	최성택	041-338-5402	양곡택배
29	예산군	(주)예산주거복지센터	충남 예산군	김연태	041-331-5407	집수리
30	예산군	(주)크린환경	충남 예산군	엄상섭	041-334-7054	청소
31	천안시	(주)민들레하우징	충남 천안시	이선영	041-564-4580	집수리
32	천안시	(주)천안돌봄 사회서비스센터	충남 천안시	정경록	041-564-0350	간병
33	천안시	(주)천안주거복지센터	충남 천안시	천명순	041-563-4044	집수리
34	천안시	늘품팩토리협동조합	충남 천안시	김성택	041-622-0350	위탁생산
35	천안시	반찬카페협동조합	충남 천안시	김명호	041-553-0350	식품생산(도시락)
36	천안시	주식회사 천안보람택배	충남 천안시	김경민	041-566-0350	양곡택배
37	청양군	(주)청양주거복지센터	충남 청양군	오태섭	041-942-7797	집수리
38	태안군	(주)태안군 주거복지센터	충남 태안군	장규중	041-674-2050	집수리
39	홍성군	(주)바로택배	충남 홍성군	박대광	041-631-5815	양곡택배
40	홍성군	(주)클린환경센터	충남 홍성군	신영출	041-633-8276	청소
41	홍성군	(주)홍성주거복지센터	충남 홍성군	박소진	041-631-5942	집수리
42	홍성군	주식회사만찬유	충남 홍성군	박광심	041-632-5816	식품생산(도시락)
43	충남	씨엔환경협동조합	충청남도	강성구	041-633-8276	청소
44	충남	충남나르미협동조합	충청남도	박원금	041-835-0810	양곡택배
45	충남	충남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가원	충청남도	오태섭	041-331-4019	집수리
46	세종시	(주)하우스토리	조치원읍	최미나	010-4000-0805	집수리 및 리모델링
47	세종시	(주)두레마을	전의면	김영도	044-868-8979 010-3452-3831	청소, 우통, 판매
48	세종시	(주)휴먼에듀피아	조치원읍	홍미현	044-868-3651 010-8802-1243	돌봄서비스 (장기요양보호)
49	세종시	누리가온협동조합	조치원읍	송지호	010-2093-0568	커피전문점 및 우통 판매
50	세종시	세종주거복지센터	연동면	이현길	010-8411-5661	리모델링, 주거복지 및 환경개선 사업
51	세종시	찬찬찬	조치원읍	이상순	010-3651-7175	급식지원

III

충북 지역자활센터&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현황

충청북도 지역자활센터&광역자활센터

연번	센터명	대표자	연락처	주소
1	괴산지역자활센터	김대식	043-832-1008	괴산군 괴산읍 괴강로 15, 2층
2	단양지역자활센터	김미정	043-421-6911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83 3층
3	보은지역자활센터	성낙현	043-543-2033	보은군 보은읍 중초길4
4	영동지역자활센터	이준호	043-745-8481	영동군 영동읍 학산영동로 1186
5	옥천지역자활센터	강호신	043-731-1549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4길 6 옥천복지타운 4층
6	음성지역자활센터	박용훈	043-872-8868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83, 2층
7	제천지역자활센터	장영주	043-648-2983	제천시 의림대로 43
8	증평지역자활센터	박경화	043-838-9230	증평군 증평읍 중동길8 3층
9	진천지역자활센터	신성철	043-533-5981	진천읍 중앙북1길 11-10,2층
10	청원지역자활센터	김경호	043-269-5720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9 도암빌딩 3층
11	청주지역자활센터	이선재	043-288-1432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83번길 (서문동198-3) 35 2층
12	충주지역자활센터	김승호	043-855-2800	충주시 예성로 208 4층(교현동352-1)
13	(사)충북지역자활센터협회	성낙현	043-237-2882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사회서비스원 306호
14	충북광역자활센터	박재국	043-298-9112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16, 세종빌딩 2층

충청북도 자활기업 현황

연번	지역	기업명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사업내용
1	충북	충북주거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상당구 교동로	김덕수	043-283-7320	집수리
2	단양	우리동네빵집	단양군 온달평강로	한혜주 신동숙	043-422-6912	식품생산 (제과,제빵)
3	보은	(주)보은주거복지센터	보은읍 춘수골길	이성남	043-542-2055	집수리
4	보은	보은제면	수한면 장선소계로	윤기태	043-542-9885	침구류, 공산품생산
5	보은	(주)깨끗한세상씨엔피	보은읍 보은로	이종만	043-544-1017	청소소독방역
6	영동	(주)한아름건축	영동읍 기골로	이광희	010-9400-5466	집수리
7	영동	두손식품	영동읍 영동시장길	고승순	043-4743-8487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8	영동	영동희망유통	학사면 상시3길	유필상	010-4038-9560	양곡배송
9	옥천	(주)새로이크린	옥천읍 성신로	박현호	043-733-1569	청소소독방역
10	옥천	(주)새로이 건축	군서면 성왕로	박병찬	043-731-8689	집수리
11	옥천	향수택배	옥천읍 삼양로	박영환	043-732-4425	양곡배송
12	음성	(주)오백국수 금왕점	금왕읍 무극로	임도연 조향자	043-881-8898	음식점
13	음성	다듬이세탁	음성읍 음성천동길	유선이 김영자	043-872-8114	세탁(가정용)
14	음성	마이커피	맹동면 용두로	후지이 지예미 외1명	070-4200-8868	일반음식점 카페
15	음성	주식회사 설성하우징	음성읍 중앙로	유재천	043-873-9490	집수리
16	음성	파란나라방역	음성읍 설성공원길	김영균 외1명	010-5505-7770	소독방역
17	제천	(주)휴먼디앤씨	고암로1길 청전동	권혜란	049-651-2983	청소소독방역
18	제천	반찬하는날	칠성로33	이봉자	043-643-4337	식품생산(반찬)
19	제천	아침햇살떡베이커리	용두천로	안옥연 하정숙	043-646-2983	떡 음식점(기타)
20	제천	(주)한누리 주거복지센터	명륜로 7길	장정옥	043-644-0484	집수리

21	제천	하늘자원&택배	신죽하로	김남혁 김민정	043-647-5574	자원재활용, 양곡배송
22	증평	(주)증평주거복지센터	증평읍 장봉길	주영석	043-838-8819	집수리
23	진천	(주)싸리비	진천읍 원동길	마경식	043-533-5987	청소소독방역
24	진천	(주)진천주거복지 센터두꺼비하우징	진천읍 문화로	김덕수	043-532-9688	집수리
25	진천	EM마을 들꽃향기	진천읍 원덕로	이미란	043-533-5385	em비누 및 세제
26	진천	주식회사 맘찬	진천읍 중앙동로	윤순란	043-533-5986	음식점(반찬)
27	진천	주식회사홈푸드맘찬	덕산읍 대하로	김희진	043-534-5981	음식점(반찬)
28	진천	해밀세차장	진천읍 남산길	김성수	043-532-5988	세차업
29	청원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청주시 충청대로	송유정	043-212-9194	사회서비스 (장기요양)
30	청원	주식회사 미가건축	청주시 남일면	한정현	043-263-0620	집수리
31	청원	주식회사 미래이엔티	오창읍 신평중산	정남규	043-216-7022	자원재활용
32	청원	한울협동조합	오창읍 구룡2길	이범진	043-211-5720	양곡배송, 공산품 판매
33	청원	(주)월화수크린	흥덕구 천석로	박형순	043-264-6240	청소소독방역
34	청주	(주)바른손스팀세차	서원구 구룡산로	윤종섭	010-2129-2486	출장 스팀세차
35	청주	(주)하나건축	상당구 쇠내로	김현미	043-286-0477	집수리
36	청주	청주희망나르미 협동조합	상당구 무농정로	조인호	043-292-2348	양곡배송
37	청주	하나환경주식회사	상당구 중흥로	한용희	043-286-1236	청소소독방역
38	충주	(주)성실기업	충주시 만리산로	이종성	043-855-7978	집수리
39	충주	(주)크린충주	충주시 천변로	박정일	043-855-2806	청소소독방역